電氣料金體系의 問題點 및 中短期 改善方向

具 本 天

（本院 研究委員）

◇ 要　約 ◇

전기요금수준과 요금체계는 산업의 생산비와 가계의 소비생활패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생산활동·산업구조·소비형태에 변화를 초래한다. 또한 적정요금의 부과는 미래의 전력수요에 부응하는 전원개발의 비용확보와 이를 통한 전력수급 안정에 필수적인 사항이다. 전기요금체계가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한계비용방식으로 장기적으로 전환되겠지만 이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예상되므로, 본 논문에서는 현재 한전이 택하고 있는 평균비용방식에 의거한 용도별 요금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중단기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현재 용도별 요금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자면, 일반용요금은 평균비용에 비해 과다하게 높은 데 반해 농사용요금은 과다하게 낮다. 또한 일반용에서 계시별 구분을 적용받는 소비자가 너무 적으며 선택요금이 다양하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주택용요금은 평균비용과 상당한 괴리가 있으며, 현재의 7단계분류는 보통 외국의 3단계 분류에 비해 복잡하며 단계별 누진율이 과다하게 높다. 주택용의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이 모두 누진적이나 이에 대한 경제적 논거가 약하다.

전기요금의 중단기적 개선의 기본방향은 한계요금체계에의 근접화, 정책적 왜곡의 최소화, 수요관리 요금체계의 강화로 정리될 수 있다. 현재의 전기요금체계는 산업정책·소득정책·정치적 선택 등 정책적 요소를 혼용하고 있는데, 정부의 경제개입이 줄어드는 추세에 맞추어 전기가 필수재라는 요소 이외의 정책적 요소는 사라져야 한다. 또한 전기가 피크기의 수요에 맞추어 용량을 확보해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크기의 수요관리는 설비비용의 절약으로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위의 기본방향을 기반으로 하여 구체적 개선방안으로 산업용·일반용·교육용의 전압별 통합, 산업용·일반용의 선택요금 및 차등폭 확대, 요금의 비용 근접화, 농사용내의 구분단일화, 주택용의 체계 단순화, 누진율의 대폭 완화, 하계수요관리요금의 도입, 계시별 차등요금시간대 단순화를 제안한다. 이러한 개선방안은 현재의 전기요금체계를 경제학적 논리기반에 근접화시키고 좀더 효율화·합리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Ⅰ. 序　　論

전기는 산업의 생산활동 및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생산요소 겸 소비재로서, 전기의 원활한 수급은 경제성장과 국민생활안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전기요금수준이나 요금체계는 산업의 생산비와 가계의 소비생활패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생산활동·산업구조·소비형태의 변화를 초래한다. 또한 적정요금의 부과는 미래의 전력수요에 부응하는 전원개발의 비용확보와 이를 통한 전력수급 안정에 필수적인 사항이다.

한국전력이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는 전기의 요금체계는 많은 변화를 겪었으나 기본적으로 평균비용방식하에서 용도별 구분을 변화시키는 것이었다. 1972년 이전까지 전기요금의 종별구분은 주택용·일반용·농사용·가로등의 네 가지만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나, 이후 1973년에 산업용이 신설되고 1992년에는 교육용이 신설되어 현재는 주택용·일반용·교육용·산업용·농사용·가로등의 여섯 가지 요금체계로 구분되어 있다. 이러한 용도별 구분은 전기를 사용 용도별로 구분하여 산업·소득·농업정책을 개입시키기 쉬운 반면, 정책이 잘못 사용될 경우 전기의 소비체계를 왜곡시키게 된다. 세계적으로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평균비용방식에 근거한 용도별 요금체계를 택하고 있는 데 반해, 프랑스는 전압별 요금체계를 받아들여 정책적 왜곡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한계비용방식을 선택하여 더욱 효율적인 가격체계를 도모하고 있다.

한계비용체계는 평균비용방식에 비해 전기소비의 경제적 가치

(한계비용)를 더 잘 반영한 가격체계이므로 소비에 있어서 더욱 효율적인 결과가 나온다. 한계비용방식은 지금까지 디자인의 어려움과 규제당국 및 소비자의 인식부족으로 아직까지 널리 확산되지는 못했지만 멀지 않아 우리나라의 전력요금체계도 한계비용에 근거하여 효율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급격한 구조변화를 동반하면서 전력수요가 계속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한계비용에 근거한 가격체계를 가까운 시일내에 도입하기가 쉽지 않은 형편이다.[1]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한국전력의 요금구조가 평균비용방식에 일정기간 계속 근거하리라는 가정하에 개선점을 모색한다. 특히 중단기적 개선의 세 가지 기본방향을 제시하며 이를 기반으로 일부 용도별 구분간의 통합과 용도별 구분내에서의 구체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다음 장에서는 현재의 주택용·산업용·일반용·농사용 요금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Ⅲ장에서는 개선의 기본방향 및 구체적 중단기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Ⅱ. 用途別料金의 現況 및 問題點

1. 住宅用料金

우리나라의 주택용 요금체계는 〈표 1〉과 같으며, 그 특징은 아래와 같이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그 이유는 한계비용방식이 향후 약 15년 정도의 장기수급계획을 예상하고 이에 의거하여 그 비용을 각 연도별로 분산시켜 가격을 산정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와 같이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변화하는 경우에는 장기수급계획의 예측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표 1〉 우리나라의 주택용 전력요금

(단위:원)

기본요금(호당)		전력량	요금(kWh당)
100kWh이하 사용	338	50kWh까지 사용	30.70
		51~100kWh 사용	72.50
101~200kWh 사용	740	101~200kWh 사용	108.90
201~300kWh 사용	1,310	201~300kWh 사용	157.50
301~400kWh 사용	2,620	301~400kWh 사용	227.70
401~500kWh 사용	4,210	401~500kWh 사용	257.50
500kWh 초과	7,490	500kWh 초과	405.10

자료 : 한국전력공사 전력경제처, 『전기요금제도 설명자료』, 1996. 9.

①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이 사용량에 따라 모두 누진적

기본요금은 발전시설 및 송·배전비용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결정되고 전력량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비례하여 증가하는 에너지비용이 기본 결정요인이므로, 한계비용의 원리에 따르면 피크시 사용도가 높을수록 기본요금이 높아야 하고, 전력량요금도 피크시에는 연료비가 높은 한계발전시설을 사용하므로 피크시에 높아야 한다. 그러나 현행 주택용의 전력사용규모는 전자식 계량기를 설치할 정도가 아니므로 피크시의 기여도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는 多사용자가 지불능력도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원칙에 따라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모두 누진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이는 주택용 가격체계에 소득정책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기본요금이 누진적인 것은 多사용자의 피크시 사용이 비례 이상으로 높다는 가정이 배경인데, 실제사용패턴을 연구한 Bary曲線을 응용하면 그런 가정을 유도할 수도 있으나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전력량요금을 누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요금구조를 통해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과 소득정책적 형

〈표 2〉 프랑스 EDF의 가정용 전력요금

계약전력(kWh)	최대부하허용량(A)	기본요금(프랑)	전력량요금(프랑)
3	15	129.00	67.29
6	30	327.84	57.77
9	45	663.48	57.77
12	60	993.60	57.77
⋮	⋮	⋮	⋮

자료 : EDF, *Blue, Yellow, Green Electricity Tariffs 1996,* 1996. 6.

평성의 두 가지 목적을 지니고 있으며 多사용자에 불리하도록 페널티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이에 반해 프랑스 EDF의 요금은 계약전력(kWh)에 따라 기본요금이 비례적으로 증가하고(즉, kWh당 단일요금) 전력량요금은 일정하다. 즉,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에 누진요소가 전혀 없다. 단지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보조적 목적으로 3kWh 이하 계약전력수용가에 대한 기본요금을 낮추는 대신 전력량요금은 약간 높여 완만하게 할인해주고 있다.

한전의 경우 주택용 전력사용의 피크시 기여도를 알지 못하여, 기여도에 따라 시설비용을 기본요금에 책정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 경우 피크시 기여도가 사용량과 비례한다는 가정하에 사용량(kWh)에 비례하는 기본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유지할 수도 있으나, 피크시 기여도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이론적으로는 기본요금으로 배전비용만을 회수하고 전력량요금으로 연료비 및 발전비용까지 회수하는 것이 이론에 충실한 방식이다.

② 매우 높은 누진율

소비자의 부담능력을 고려한 소득정책과 수요억제를 통한 에너지절약정책이 혼합되어 있어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의 누진율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러한 높은 누진율의 결과 주택용 소비자의 전기요금은 사용전력량이 증가함에 따라 급격히 상승하게

된다(부도 1 참조). 전기는 필수재화이기 때문에 低소득층을 위한 최저단계의 요금에 대한 할인은 불가피하다. 低소비층의 할인액은 주택용 전력요금 안에서 중간 및 고소득층이 일정비율로 나누어 부담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2)]

低소비층에 대한 할인액을 中·高소비층이 분담하는 것과 에너지 소비억제를 위하여 부담하는 누진율은 경제적으로 효율적이지만, 그 이상의 페널티적인 누진율을 高소비층에 부과하는 것은 정부가 담당하여야 할 소득정책을 한국전력이 지원하는 셈이다. 경제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결정된 稅率에 기반하지 않고 비용에 충실하지도 않은 전기요금의 高누진율은 효율적이지 못하다. 또한 전력 多소비가구와 고소득가구가 꼭 일치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득정책은 세금을 통하여 실천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3)]

전력요금에 있어 소득정책적 요소는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보조정책으로 충분하며, 저소득층 보조분을 나머지 소비층이 분담하는 비율이 연구사항으로 남는다. 현재의 평균원가방식에서 원가 이하로 전기료를 지불하는 주택용 수용가가 78%에 이르러 나머지 22%가 결손분을 보충하는 것은 에너지절약정책과 일치하지 않아 교정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78%와 22%는 평균비용개념에 의거하여 추정된 수치이므로 정확한 비율의 계산을 위해서는 평균비용의 재검토 및 한계비용에 의거한 계산과의 비교가 필요하다.

누진율은 기본적으로 한계비용 및 에너지절약의 기회비용의

2) 저소득층의 할인액을 주택용 요금체계내에서 보조하지 않고, 다른 분류(일반용, 교육용)까지 부담을 넘기는 것은 가격체계에 더 큰 왜곡을 가져오게 되므로 부적절하다.

3) 저소득층을 위한 가격할인시에도 별장 등 전력 저소비자와 저소득자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나, 선별이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소비자를 저소득자로 간주하여 할인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표 3〉 외국의 주택용 누진요금 사례

구 분	한 국	일 본	대 만	미 국[1]	프랑스	말레이시아
누진단계	7	3	3	2	2	3
누진배수	13.2	1.5	1.5	1.1		1.3
1단계(kWh)	0~50	0~120	0~110	0~600	3이하	0~100
2단계(kWh)	50~500	121~250	110~330	600초과	6이상	101~1,000
3단계(kWh)	500이상	250초과	330초과			1,000초과

주 : 1)미국의 PSEG(Public Service Electric & Gas Company:뉴저지 소재) 경우.
자료 :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의 이론 및 정책방향』.

개념에 기반을 두고 정해져야 한다. 높은 전기 소비량은 무조건 억제되어야 할 경제행위는 아니며, 그 전기량을 생산하기 위한 자원이 다른 용도로 쓰일 때 더 효율적이라면 그 기회비용만큼 소비자에게 부담을 지움으로써 자원이 효율적인 다른 용도로 쓰이게 해야 한다. 현재 7단계 누진에 따라 최고단계의 전기료를 최저단계와 비교하면 13.2배가 되는데, 피크시의 기여도를 알지 못하므로 한계비용의 高低를 구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최고단계의 1kWh의 기회비용이 최저단계의 1kWh의 13배가 되리라고 생각하기 힘들다.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의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율을 살펴보아도 최고 1.5배에 불과하다. 즉, 주요 국가의 경우 주택용 요금에서의 소득정책적 요소는 매우 작아서 최저단계의 소비층만 보조해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누진율에 저소득층을 위한 최저단계 할인은 계속 유지하되 최고단계의 누진율을 원가에 근접하도록 누진율을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전력의 가격체계는 전력의 효율적인 사용 및 실제 경제적인 가치를 반영하기 위하여 한계비용에 입각하여 짜여져야 하는데, 한계비용의 원칙에 따르면 사용량에 따라 누진율이 높은 것이 아니라 피크시의 기여도에 따라 누진율이 높아야 한다. 예를 들어, EDF에서 시도하고 있는 BBR(白·靑·赤계시 구분)제도에

서는 한 소비자에 대해서 1년중 가장 낮은 가격시간대에는 1kWh당 2.95달러를 적용하는 반면, 가장 비싼 피크시간대에는 42.70달러를 부과하여 비율이 14.5배에 달하여 피크시 기여도에 따라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한계비용에 입각한 가격체계를 가지고 있다.[4] 한계비용체계는 사용자간의 누진율에 집착하기보다 한 사용자의 피크시 사용도에 따라 가격을 부과함으로써 소비자가 그 시간에 사용을 회피하게 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효율적인 구조이다.

③ 요금과 비용의 괴리

주택용 요금수익 전체로 보면 평균비용에 의거한 원가 85.00원/kWh보다 높은 88.96원/kWh의 수익으로 원가 대비 104.7%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단계별로 판매단가와 판매비용(평균비용)을 비교해보면, 판매원가는 모든 단계에서 kWh당 85.00원인데 50kWh 이하를 사용하는 소비자는 kWh당 37.46원으로 원가의 44.1% 수준이고 300kWh의 사용자는 kWh당 110.37원으로 원가의 129.8%, 500kWh의 사용자는 kWh당 168.96원으로 원가의 198.8%를 부담하고 있다(부도 2

〈표 4〉 주택용 전력요금 수익

구 분	호수 (호)	판매량 (GWh)	판매수입 (억원)	단가 (원/kWh)	원가 (원/kWh)	회수율 (%)
주택용전체	10,476,101	35,627	31,695	88.96	85.00	104.7
순수주택	10,476,126	27,381	24,603	89.86	85.00	105.7
아 파 트	3,975	8,246	7,092	86.00	85.00	101.2

자료 : 한국전력공사 전력경제처, 『전기요금제도 설명자료』, 1997. 1.

4) 주택용의 경우는 전자식계량기가 없어 BBR제도가 적용되지 못한다. 대신 주택용의 경우에 Tempo라는 제도를 운영중이며 프랑스의 제도설명 부분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표 5〉 주택용요금의 평균비용 대비 회수율

	판매단가(원/kWh)	판매원가(원/kWh)	회수율(%)
주택용 전체	88.96	85.00	104.7
50kWh 사용시	37.46	85.00	44.1
300kWh 사용시	110.37	85.00	129.8
500kWh 사용시	168.96	85.00	198.8

자료 : 한국전력공사 전력경제처, 『전기요금제도 설명자료』, 1997. 1.

및 표 5 참조).

『전기요금체계의 합리화방안 연구』(이하 『요금체계보고서』)에서 필자가 한계비용에 입각하여 계산한 바에 따르면, 주택용 기본요금은 전력량에 따라 변하므로 직접적인 비교가 불가능하지만 일정한 제약 아래 계산한 한계설비비용은 1,089~2,178원이다(『전기요금체계의 합리화방안 연구』에서의 한계요금계산의 개요는 부록에서 설명한다). 이와 비교하면 현재 150kWh 수용가의 기본요금은 740원으로 비교적 낮은 편이고, 250kWh 수용가의 기본요금은 1,310원으로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5)]

이에 반해 손양훈(1997)의 한계비용에 입각한 연구에 의하면 한계설비비용이 7,245원으로 계산되었고 이에 비해 250kWh 수용가의 기본요금은 1,310원이므로 너무 낮게 책정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어, 『요금체계보고서』의 결과와 큰 차이가 있다. 손양훈(1997)의 연구에서 제안된 가정에 따라 100kWh/월 소비자와 300kWh/월 소비자의 전력량요금을 비교해보면, 100kWh/월 소비자는 17,756원이 부과되어야 하는데 현행요금은 7,757원으로 비용반영이 44%를 조금 넘는 수준이고, 300kWh/월 소비자는 49,644원을 지불해야 하는데 현행요금은 37,040원으로 약 75% 정도만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다.[6)]

5) 이 보고서의 한계비용 요금체계는 체계제시를 위한 한 예에 불과하고 수준도 한전의 재무분석에 따라 조정된 것이므로 큰 의미를 두지 않아야 한다.

〈표 6〉 주택용 가구 · 호당 월평균 사용량 추이

(단위:kWh)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가구당	120	125	133	139	151	156
호 당	173	178	185	188	205	206

자료 : 한국전력공사 전력경제처, 『전기요금제도 설명자료』, 1996. 9.

손양훈(1997)의 계산방법이나 『요금체계보고서』의 한계비용계산방식은 여러 가지 계산방식의 일부이므로 향후 한전에서는 여러 가지 계산방법을 비교 · 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방식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부도 3], [부도 4]와 〈표 7〉은 주택용수용가의 전력수요분포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가구별 사용량을 살펴보면 먼저 1995년도의 가구당 월평균 사용량은 156kWh이다. 이중 50kWh 이하의 사용자는 전체 가구 중 8.7%를 차지하며 주택용 전체전기소비 중 1%, 전기요금 중 0.6%를 담당하고 있다. 평균사용량에 해당하는 101~200kWh 사용가구는 전체의 53.9%를 차지하고 사용량에서는 51.3%, 전기요금에서는 42.1%를 부담하고 있다. 201~500kWh 사용가구는 전체의 21.1%이며, 사용량으로는 36%를 차지하고 전기요금 중 43%를 차지하고 있다. 500kWh 이상의 사용가구는 전체의 0.9%이며, 사용량에서는 3.8%, 전기요금은 9.9%를 부담하고 있다. 이는 200kWh 이하 사용가구(전체의 78%)가 평균비용에 의한 원가 이하의 가격을 지불하고 있으며, 따라서 나머지 22%가 이들을 보조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78%의 가구가 낮은 가격으로 인하여 적정량 이상의 소비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큼을 의미한다.[7] 이는 누진체계가 에너지절약에 기

6) 이 계산에는 주택용 전력수요의 패턴에 대한 미시적인 자료가 필요하지만 구할 수 없는 제약이 있으며, 300kWh/월 수용가의 피크는 4kWh, 100kWh/월 수용가의 피크는 1.5kWh라고 가정하였다.

〈표 7〉 주택용의 단계별 사용량 현황(1995년 월평균)

사용량별 (kWh)	가구수 (천가구)	%	사용량 (천kWh)	%	전기요금 (억원)	%
50이하	1,277	8.7	22,676	1.0	12	0.6
51~100	2,264	15.4	181,337	7.9	91	4.4
101~150	4,325	29.3	548,034	23.9	397	18.1
151~200	3,623	24.6	627,930	27.4	501	24.0
201~300	2,459	16.7	583,259	25.4	568	27.2
301~400	516	3.4	175,256	7.6	223	10.7
401~500	155	1.0	68,667	3.0	108	5.1
501~1,000	113	0.8	71,077	3.1	157	7.5
1,000초과	9	0.1	14,926	0.7	50	2.4

자료 : 한국전력공사 전력경제처, 『전기요금제도 설명자료』, 1996. 9.

여하지 못하고 도리어 어떤 면에서는 에너지소비를 조장할 가능성도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 지불액을 보면, 50kWh 사용자는 한달에 전기요금으로 2,060원을 청구받고, 100kWh 사용자는 6,040원, 150kWh 사용자는 12,480원, 200kWh 소비자는 18,460원, 300kWh 소비자는 36,420원, 400kWh 소비자는 62,900원, 500kWh 소비자는 92,900원을 납부하고 있다.

④ 7단계 분류

전기소비량별로 단계를 구분할 때에는 단계별로 부하패턴이 일정하다든지, 저소비층에 대한 보조를 위해 구분이 필요하다든지, 에너지소비절약을 위하여 다소비층을 구분해야 하는 등의 구체적인 필요에 따라 구분하여야 하나, 현재는 50kWh의 저소비층과 500kWh의 다소비층의 구분 이외에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

7) 200kWh 이하 소비자의 사용량은 전체의 60.2%이고, 200kWh 이상 소비자의 사용량은 39.8%이다.

외국의 경우에는 앞의 〈표 3〉에서 보듯이 분류가 2~3단계에 불과한데, 이는 한계비용 또는 평균비용에 근거하여 단계구분을 하였기 때문이다.

가격구조는 전력사의 입장에서는 부하패턴에 따라 최대한 비용을 반영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체계가 단순하여 어떤 시그널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소비자는 재화(전기)를 소비할 때 재화의 가격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어야 그 재화의 소비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면에서 현재의 가격구조 및 단계는 너무 복잡하여 이러한 계산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에는 저소비층, 중소비층, 고소비층의 3단계 분리에 의한 약한 누진구조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우리도 가급적 원가구조와 합치하는 방향으로 현행 누진구조를 점차 단순·합리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구분점의 선택에 있어서 저소비층은 소득보조를 위하여, 고소비층은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단계를 구분하는 것이 최적이며 복지정책 및 단계별 소비패턴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주택에도 주·야간을 구별할 수 있는 계량기를 설치하여 한계비용에 따른 가격을 지불토록 하는 것이 최적이나 이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지불될 것이다(프랑스 EDF는 상당수 시행중).

전체가구의 78%가 원가 이하의 서비스를 공급받고 22%가 보조하는 것은 소득정책적 요소를 반영한 결과이다. 적정 요금보조의 수준 및 수혜계층에 대한 보다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관련자료로서 정부의 복지정책 중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생활보호제도는 1990년에 인구의 5.2%인 242만6천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1995년에는 전국민의 3.3%인 150만6천명으로 감소되었다. 이는 국민소득의 향상에 따라 정부의 지원을 받는 대상이 감소

〈표 8〉 생활보호대상자 추세

(단위:천명, 천세대)

구 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대상자(전체인구 중 구성비)	2,426 (5.2%)	2,176	2,001	1,902 (4.3%)	1,755 (3.9%)	1,506 (3.3%)
세대수[1]	656	659	611	587	601	521

주 : 1) 세대수는 거택보호, 자활보호대상임(시설보호는 제외).
자료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백서』, 1995.

되고 있음을 반영한 결과이다. 생활보호 대상에만 전기료를 할인해주기보다는, 전기가 필수재임을 감안하여 저소득층 국민 전반에게 최소한의 생활이 보장되는 수준까지 할인하여주는 것이 적정할 것이다.

2. 一般用料金

우리나라의 일반용 요금체계는 〈표 9〉, 〈표 10〉, 〈표 11〉과 같다.

일반용(을)은 일반용 고객 중 계약전력 5,000kWh 이상의 고객에게 적용하며 전자식계량기를 구비하고 있어 계절별·시간별로 전력량요금을 조정하지만, 일반용(갑)은 계약전력 5,000kWh

〈표 9〉 우리나라의 일반용 전력요금(갑)

(단위:원)

구 분		기본요금 (kWh당)	전력량요금(kWh당)		
			여름철	봄·가을철	겨울철
저 압 전 력		4,520	82.40	55.90	59.30
선택 (Ⅰ) 요금	고압 A	4,520	81.90	55.50	58.90
	고압 B		79.90	54.10	57.50
선택 (Ⅱ) 요금	고압 A	5,200	78.50	52.10	55.50
	고압 B		76.50	50.70	54.10

자료 : 한국전력공사 전력경제처, 『전기요금제도 설명자료』, 1996. 9.

〈표 10〉 우리나라의 일반용 전력요금(을)

(단위:원)

기본요금(kWh당)			전력량요금(kWh당)			
			시간대	여름철	봄·가을철	겨울철
선택(Ⅰ) 요금	고압 A	4,520	경 부 하	38.80	38.80	38.80
			중간부하	78.10	59.40	67.30
			최대부하	115.70	78.10	90.30
	고압 B		경 부 하	37.70	37.70	37.70
			중간부하	75.80	57.60	65.30
			최대부하	112.20	75.80	87.50
선택(Ⅱ) 요금	고압 A	5,200	경 부 하	35.40	35.40	35.40
			중간부하	74.70	56.00	63.90
			최대부하	112.30	74.70	86.90
	고압 B		경 부 하	37.30	34.30	34.30
			중간부하	72.40	54.20	61.90
			최대부하	108.80	72.40	84.10

자료 : 한국전력공사 전력경제처, 『전기요금제도 설명자료』, 1996. 9.

〈표 11〉 일반용(을) 계절별·시간대별 구분

구 분	여름철	봄·가을철	겨울철
	7~8월	4~6월, 9월	10월~익년 3월
경부하 시간대	22:00~08:00		22:00~08:00
중간부하 시간대	08:00~10:00 12:00~14:00 17:00~22:00		08:00~16:00 20:00~22:00
최대부하 시간대	10:00~12:00 14:00~17:00		16:00~20:00

미만의 고객에게 적용하며 전자식계량기를 갖추지 않아 계절별로만 차등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 일반용 요금체계의 특징 및 문제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① 요금과 비용의 괴리

현재 일반용은 평균원가의 개념으로 계산한 원가에 대비한 회

〈표 12〉 일반용 전력요금 수익

구 분	호 수 (호)	판매량 (GWh)	판매수입 (억원)	단 가 (원/kWh)	원 가 (원/kWh)	회수율 (%)
일반용전체	1,171,391	37,928	34,494	90.96	71.31	127.6
- 갑	1,171,255	35,279	32,472	92.04	72.60	126.8
• 저압	1,145,765	19,741	19,540	98.98	83.40	118.7
• 고압 A	25,474	15,496	12,899	83.24	59.35	140.3
• 고압 B	16	42	33	78.66	56.41	139.4
- 을	136	2,641	2,022	76.54	53.10	144.1
• 고압 A	134	2,331	1,793	76.89	54.07	142.2
• 고압 B	4	310	229	73.93	43.84	168.6

자료 : 한국전력공사 전력경제처, 『전기요금제도 설명자료』, 1997. 1.

수율이 127.6%에 이르러 매우 높다. 전기요금 전체의 원가회수율이 102.0%에 이르고 있으므로 산업용·농사용에 대한 지원을 일반용·교육용·주택용 등이 부담을 지고 있는 셈이다.

산업용이 생산지원이라는 정책적 배려로 낮은 가격을 책정받고 있는 데 반해, 일반용은 소비용이라는 생각에 경제이론적·정책적 근거 없이 높은 가격을 부담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반용전력의 대상은 주택용·교육용·산업용·농사용·가로등·심야·예비·임시전력 이외의 고객이며, 주고객은 사무실, 상가, 호텔, 병원 등이다. 과거의 산업정책이 제조업을 우선시하여 산업용이 우대를 받았으나, 금융·통신·유통·레저·복지 등 미래를 지향하는 산업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서비스산업의 비중과 중요성이 증가하는 현실에서는 제조업만을 위해 자원을 집중시키는 것이 꼭 효율적이라 할 수 없다. 근래에 와서는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경계가 모호해져 가고,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을 동시에 육성하여야 하는바 산업용과 일반용을 차별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으며 산업구조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 장기적으로 전압이 같은 일반용과 산업용 내의 수용가

를 동일한 요금체계로 통합하여 운용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산업용의 많은 수용가가 하루 종일 일정한 부하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으며, 일반용의 경우에는 주간에 부하가 많이 걸리고 야간에는 약하게 걸리는 타입이 많기 때문에 요금체계의 완전한 통합은 어렵겠지만, 한계비용의 경우에는 같은 전압내에서 장기간 사용자와 중기·단기간 사용자를 구분하는 가격체계를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원가 외의 요소에 의존한 차별은 없앨 수 있다.

②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의 적정성 논란

몇 가지 연구에 따르면 일반용의 기본요금은 적정수준에 비해 낮은 반면 전력량요금은 적정수준에 비해 높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적정기본요금 및 전력량요금수준은 평균비용가격방식과 한계비용가격방식간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평균비용방식 내에서도 원가산정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현행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김임호(1995)에 따르면 일반용요금 중 기본요금이 차지해야 할 비중은 전체의 40.1%이지만 현재 32.4%만 차지하고 있어 그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8] 한계비용에 입각한 전기요금체계를 계산한 손양훈(1997)에 따르면, 평균비용에 입각한 현재의 기본요금은 한계비용에 의한 기본요금의 30~40%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손양훈의 연구에서 高壓의 한계설비비용은 12,129원이므로 현행 기본요금(4,520원)은 이의 37%에 불과하고, 中壓 및 低壓의 기본요금은 한계설비비용의 30% 수준이라고 한다. 같은 연구에서 일반용의 전력량요금은 한계변동비용보다 높은 편으로, 일반용(을)은 계절

8) 김임호, 『전기요금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한국전력 제13기 경영대학원과정, 1995. 12.

에 상관없이 최대부하시에 비해 30~40% 가량 높은 수준이라고 한다.

반면 『요금체계보고서』에서 계산한 한계비용에 의거한 중압 기본요금은 현재 일반용 기본요금과의 차이가 다른 보고서만큼 크지는 않았다. 『요금체계보고서』에서 계산한 한계비용 요금체계에서 중압(3,300~66,000v)의 기본요금은 월 8,308~4,249원으로 일반용의 4,520~5,200원에 비해 약간 높은 편이다. 그러나 이 비교는 같은 전압간의 비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아니며, 한계비용의 계산방식에 따라, 그리고 고정비용과 변동비용의 배분방식에 따라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이 큰 차이가 나므로 체계 비교시 여러 가지 주의가 요구된다.

③ 복잡한 계시별 구분

현재 일반용(을)의 시간대 구분은 부하패턴에 충실하게 만들어져 비용을 잘 반영하는 전략적 가격구조의 일환으로 작용하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체계가 복잡하다. 현재 봄·여름·가을은 최대부하 5시간, 중간부하 9시간, 경부하 10시간으로 나누어져 있고, 겨울은 최대부하 4시간, 중간부하 10시간, 경부하 10시

〈표 13〉 우리나라 일반용의 계시별 구분(1년=8,760시간)

계시별 시간구분	시간
여름 최대부하	310 시간
여름 중간부하	558 시간
여름 경부하	620 시간
봄·가을 최대부하	605 시간
봄·가을 중간부하	1,089 시간
봄·가을 경부하	1,210 시간
겨울 최대부하	728 시간
겨울 중간부하	1,820 시간
겨울 경부하	1,820 시간

〈표 14〉 Yellow(기본옵션)의 계시별 구분(1년=8,760시간)

계 시 별 시 간 구 분	시 간
겨울 최대부하(HPH)	2,416 시간
겨울 저부하(HCH)	1,208 시간
여름 최대부하(HPE)	3,424 시간
여름 저부하(HCE)	1,712 시간

자료 : EDF, *Blue, Yellow, Green Electricity Tariffs 1996*, June 1996.

〈표 15〉 Green(A5)의 계시별 구분(1년=8,760시간)

계 시 별 시 간 구 분	시 간
특 별 최 대 부 하 (P)	309 시간
겨 울 최 대 부 하 (HPH)	1,762 시간
겨 울 저 부 하 (HCH)	1,553 시간
여 름 최 대 부 하 (HPE)	2,935 시간
여 름 저 부 하 (HCE)	2,201 시간

자료 : EDF, *Blue, Yellow, Green Electricity Tariffs 1996*, June 1996.

간으로 나누어져 있다.

우리나라의 일반용과 견줄 수 있는 EDF의 Yellow와 Green (A5)의 경우 계시별로 비용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체계는 단순하다. Yellow의 기본옵션에 따르면 계절별로는 11월부터 3월까지 5개월간의 겨울시즌과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의 여름시즌이 있고, 시간별로 최대부하시간은 하루 16시간, 저부하시간은 하루 8시간으로 정해져 있다.[9)]

반면 Green(A5)의 기본옵션은 계절구분은 Yellow와 같으나, 시간별로 최대부하시간은 겨울에 하루 4시간(일요일 제외)이고, 저부하시간은 하루 8시간(일요일 하루종일), 중간부하시간은 나머지 시간들이다.

9) Yellow에서도 EJP옵션을 선택하면 겨울시즌에 선택된 22일동안 하루 18시간의 최대부하를 적용받고 나머지 겨울시즌은 기본옵션과 같은 시간을 적용받는다.

우리나라 봄·가을의 중간부하와 경부하는 부하수준이 매우 낮아서 다른 계절로 치면 경부하에 해당한다. 봄·가을의 중간부하는 일반적인 경부하 수준의 낮은 저크기를 다시 2단계로 분류해놓은 셈으로 분류를 복잡하게만 하는 경향이 있다. 여름 점심시간의 중간부하기도 이미 타계절의 최대부하를 초과하고 있는 피크기이므로 이를 피크기로 취급하는 것이 비용에 충실한 요금방식이며 소비자에게도 올바른 시그널이 될 수 있다.

④ 계시별 구분의 적용확대

현재 일반용 소비자 중 일반용(을)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0.01%에 불과하여 계시별차등을 적용받는 대상이 너무 적다. 일반용 대상은 전체 1,171,391호인데 이중 일반용(갑)은 1,171,255호인 반면 일반용(을)은 136호에 불과하여 전체의 0.01%에 불과하여 계시별 차등요금에 의한 수요관리효과가 작다(그러나 일반용(을)은 고압의 소비자여서 소비전력으로 따지면 일반용 전체의 6.9%에 이른다). 일반용(갑)의 사용자 중 저압이 대부분으로 97.8%를 차지하고 있지만, 고압 A(3,300~66,000V)와 고압 B(154,000V이상)도 각각 25,474호와 16호가 있으므로 고압 A 및 B 수용가에 전자식계량기를 설치하여 부하패턴의 변화를 유도하는 계시별차등요금을 적용시키는 방법이 있다.

⑤ 선택요금의 차별화 강화

현재 일반용은 선택 (I)과 선택 (II)의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에 경미한 액수의 차등을 두고 있으나 보다 차등이 큰 옵션을 제공해야 한다. 선택 (I)과 선택 (II)는 기본요금에서 4,520원과 5,200원으로 차이를 두고 있고 전력량요금에서는 선택 (I)을 전체적으로 약간씩 비싸게 적용하고 있는 차이밖에 없다. 선택요금

은 소비자의 부하패턴의 차이에 따른 원가구조의 차이를 최대한 정확히 요금에 반영함으로써 소비자 스스로의 선택에 의한 효율적인 전력소비구조를 유도함을 기본적인 목적으로 한다. 현재 일반용 선택요금간의 차등폭은 이러한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너무 미미하여 소비자가 자신의 소비패턴을 변화시키기보다는 단지 전기요금만 절약할 수 있는 요금을 택하는 정도에 그칠 것이므로 실제 원가구조에 따라 피크수요의 이동을 가져오게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옵션의 개발이 필요하다.[10]

예를 들어, EDF는 Yellow와 Green의 기본옵션에 더하여 EJP 옵션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제도의 대부분은 기본옵션과 같고 단지 연중최대피크가 나타나는 겨울의 未指定 22일간의 하루 18시간을 피크로 정하여 매우 높은 최대요금을 적용하는 옵션이다.[11] 선택형태는 부하의 변동정도에 따라 차별화되는데, 이는 전기사용시간이 길고 짧은가와 상관관계가 높다.

『요금체계보고서』에서 예시한 한계비용에 의거한 가격체계에서도 사용시간에 따른 구분으로 장시간·중시간·단시간의 사용시간에 따라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에서 커다란 차이를 주는 요금표를 예시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수요에 변화를 유도하거나 부하의 다양성에 따라 비용을 반영하는 변동이 큰 옵션을 주는 것이 선택요금의 목적에 타당하다.

3. 産業用料金

우리나라의 산업용 요금체계는 〈표 16〉, 〈표 17〉, 〈표 18〉에

10) 물론 기본요금을 적정수준으로 정할 수만 있다면, 여러 옵션을 제공하는 것이 소비자 및 전력회사 모두에게 좋을 수 있다.

11) 각 22일은 전날에 계량기의 색깔신호변화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알린다.

〈표 16〉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력요금(갑)

(계약전력 300kWh미만, 단위:원)

구 분		기본요금 (kWh당)	전력량요금(kWh당)		
			여름철 (7~8월)	봄·가을철 (4~6, 9월)	겨울철 (10~3월)
저압전력		3,340	50.10	38.30	41.10
선택 (Ⅰ) 요금	고압 A	3,310	49.70	38.10	40.70
	고압 B	3,070	49.00	37.60	40.20
선택 (Ⅱ) 요금	고압 A	3,810	47.20	35.60	38.20
	고압 B	3,530	46.70	35.30	37.90

〈표 17〉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력요금(을)

(계약전력 300~1,000kWh미만, 단위:원)

기본요금(kWh)당			전력량요금(kWh당)				
			시간대	여름철	봄·가을철		겨울철
					6월	4, 5, 9월	
선택 (Ⅰ) 요금	고압 A	3,310	심야시간	27.10	27.10	27.10	27.10
			주간시간	66.80	47.90	39.90	44.80
			저녁시간	47.90	39.90	47.90	52.60
	고압 B	3,070	심야시간	26.70	26.70	26.70	26.70
			주간시간	64.80	46.40	38.70	43.50
			저녁시간	46.40	38.70	46.40	51.00
선택 (Ⅱ) 요금	고압 A	3,810	심야시간	24.60	24.60	24.60	24.60
			주간시간	64.30	45.40	37.40	42.30
			저녁시간	45.40	37.40	45.40	50.10
	고압 B	3,530	심야시간	24.40	24.40	24.40	24.40
			주간시간	62.50	44.10	36.40	41.20
			저녁시간	44.10	36.40	44.10	48.70

자료 : 한국전력공사 전력경제처, 『전기요금제도 설명자료』, 1996. 9.

설명되어 있다.

산업용(병)의 시간대 구분은 일반용(을)과 같으며 산업용(을)은 전자계량기가 설치되면 산업용(병)으로 흡수될 예정이다. 우리나라 산업용 요금체계의 특징 및 문제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표 18〉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력요금(병)

(계약전력 1,000kWh이상, 단위:원)

기본요금(kWh)당			전력량요금(kWh당)			
			시간대	여름철	봄·가을철	겨울철
선택 (Ⅰ) 요금	고압 A	3,310	경 부 하	27.10	27.10	27.10
			중간부하	54.70	41.50	47.10
			최대부하	80.70	54.70	63.40
	고압 B	3,070	경 부 하	26.70	26.70	26.70
			중간부하	54.20	41.10	46.60
			최대부하	80.00	54.20	62.80
선택 (Ⅱ) 요금	고압 A	3,810	경 부 하	24.60	24.60	24.60
			중간부하	52.20	39.00	44.60
			최대부하	78.20	52.20	60.90
	고압 B	3,530	경 부 하	24.40	24.40	24.40
			중간부하	51.90	38.80	44.30
			최대부하	77.70	51.90	60.50

〈표 19〉 산업용(병) 계절별·시간대별 구분

구 분	여름철	봄·가을철	겨울철
	7~8월	4~6월, 9월	10월~익년3월
경부하 시간대	22:00~08:00		22:00~08:00
중간부하 시간대	08:00~10:00 12:00~14:00 17:00~22:00		08:00~16:00 20:00~22:00
최대부하 시간대	10:00~12:00 14:00~17:00		16:00~20:00

〈표 20〉 산업용(을) 시간대별 구분

시간대구분	시 간
심 야	22:00~08:00(10시간)
주 간	08:00~18:00(10시간)
저 녁	18:00~22:00(4시간)

〈표 21〉 산업용 전력 구분

전력구분	전 력
저압전력	110~380V
고압 A	3,300~66,000V
고압 B	154,000V

① 요금과 비용의 괴리

현재 산업용은 평균원가의 개념으로 계산한 원가에 대비한 회수율이 92.8%에 불과하다. 전기요금 전체의 원가회수율이 102.0%에 이르고 있으므로, 전체전력 판매량의 60%를 차지하는 산업용이 원가 이하의 회수율을 가지면 손실액이 상당하며 이 손실액을 다른 종별에서 회수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차액환수를 위하여 일반용, 주택용, 교육용이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산업용요금을 낮게 책정한 것은 산업지원정책의 일환이나 이는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사용자가 절약을 해야 하는 에

〈표 22〉 산업용 전력요금 수익

구 분	호수 (호)	판매량 (GWh)	판매수입 (억원)	단가 (원/kWh)	원가 (원/kWh)	회수율 (%)
산업용전체	220,297	119,856	58,352	48.69	52.46	92.8
- 갑	202,898	14,243	9,100	63.89	72.61	88.0
• 저압	177,919	6,083	4,387	72.13	82.91	87.0
• 고압 A	24,966	7,342	4,313	58.74	66.70	88.1
• 고압 B	13	818	400	48.88	49.43	98.9
- 을	16,603	20,004	10,327	51.62	56.52	91.3
• 고압 A	16,579	16,746	8,917	53.25	57.18	93.1
• 고압 B	24	3,258	1,410	43.26	49.00	88.3
- 병	796	85,609	38,925	45.47	50.72	89.6
• 고압 A	587	32,652	15,782	48.33	56.35	85.8
• 고압 B	209	52,957	23,143	43.70	44.59	98.0

자료 : 한국전력공사 전력경제처, 『전기요금제도 설명자료』, 1997. 1.

너지절약정책과 상반되는 면을 지니고 있다. 주택용요금에의 높은 누진율과 일반용에의 높은 가격수준으로 에너지소비를 억제하는데 반해, 전력소비의 60%를 차지하는 산업용에는 지원차원에서 낮은 가격을 책정할 경우 전체 에너지소비절약의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산업정책은 과거부터 제조업 위주의 정책기조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경제규모에 비해 전기사용이 많은 구조를 가지게 되었으며 산업용에 대한 지원으로 비효율적 에너지 소비는 심화되었다. 실제로 산업용은 전력판매량에서 59.7%를 차지하지만 판매수입은 5조8천억원 가량으로 전체의 46%에 불과하여 상대가격이 낮아 소비에 비해 매출이 작다.

②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의 적정성 논란

한전 전력경제처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에서 기본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2.6%로 평균비용에 입각한 적정기본요금 수준인 47.9%에 비해 현저히 낮은 편이다.[12] 한계비용에 입각한 전기요금체계를 계산한 손양훈(1997)에 따르면, 현재의 기본요금은 한계비용에 의한 기본요금에 비하여 고압은 21%, 중압은 18%, 저압은 16%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한다. 손양훈(1997)은 전력소비의 60%를 차지하는 산업용의 기본요금이 낮으면, 피크시 설비비용의 반영을 통하여 수요관리를 적정하게 유도하는 기본요금의 기능이 인센티브로 작용하지 못하여 최대부하 관리정책과 상반된 방향임을 지적하고 있다. 손양훈(1997)에서 산업용의 전력량요금은 계절별·시간대별로 한계변동비용에 적절하게 부합하는 전력량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용(을)과 산업용(병)은 한계비용과 유사하거나 조금 낮

12) 한국전력공사 전력경제처, 『요금조정 참고자료』, 1996. 5.

게 전력량요금을 부과하고 있어 수요관리기능의 약화를 우려하고 있기도 하다.

『요금체계보고서』의 한계비용 요금구조에 있어 고압의 경우 월 기본요금은 장기사용자가 6,643원으로 현재 가격체계의 기본요금에 비해 두 배에 이른다. 그러나 중기사용자의 기본요금은 3,211원으로 현 체계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전력량요금에 있어 수준의 비교는 큰 의미를 두기 어려우나 간단히 표현하자면 피크기와 비피크기의 전력량요금 차이가 평균비용방식보다 한계비용방식에서 더 현저하다고 할 수 있다.

산업용 전력의 가격을 한계비용에 맞추어 효율화하려면 전력량요금의 계시별에 따른 차등을 강화하여 수요관리기능에 충실하면 될 것이다.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제조업뿐 아니라 서비스산업 및 다른 모든 산업이 함께 중요해짐에 따라 전력량요금에서 제조업중시 및 산업경쟁력 강화적 요소는 이제 지양해야 할 것이며, 에너지 절약을 우선시하여 산업용 전력가격을 한계비용을 기본으로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4. 農事用料金

우리나라의 농사용 요금체계는 〈표 23〉과 같다.

〈표 23〉 우리나라의 농사용 전력요금

(단위 : 원)

구 분	기본요금(원/kWh)	전력량요금(원/kWh)
갑	300	18.30
을	810	23.50
병	950	32.40
전등	kWh당 17원(최저요금 570원)	

자료 : 한국전력공사 전력경제처, 『전기요금제도 설명자료』, 1996. 9.

농사용(갑)은 양곡생산을 위한 관개용의 양수·배수펌프 및 수문조작에 사용하는 전력에 적용되며, 농사용(을)은 농사용의 육묘 또는 전조재배에 사용되는 전력이며, 농사용(병)은 계약전력 500kWh 미만의 고객으로서 농사용(갑) 및 (을) 이외의 고객에 해당된다. 농사용 전등은 해충구제용 및 유아용 전기에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농사용 요금체계의 특징 및 문제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① 요금과 비용의 괴리

현재 농사용은 농업지원정책의 영향으로 인하여 판매단가의 평균원가회수율이 43.2%에 지나지 않는다(표 24 참조). 이는 전기요금 전체의 평균회수율 102.0%에 비해 턱없이 적을 뿐 아니라 지원을 받아 원가회수율이 낮은 산업용의 92.8%에 비해서도 굉장히 낮은 것이다.

농사용은 kWh당 원가도 가장 높아서 86.96원에 이르지만 농사용(갑)의 원가회수율은 24.7%에 불과하고 농사용 중 가장 높은 전등의 원가회수율도 77.0%에 불과하다. 低回收率은 농업육성정책뿐만 아니라 농촌의 저소득층을 보조하기 위한 소득정책적 요소도 가미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표 24〉 농사용 전력요금 수익

구 분	호수 (호)	판매량 (GWh)	판매수입 (억원)	단가 (원/kWh)	원가 (원/kWh)	회수율 (%)
농사용 전체	546,843	4,510	1,687	37.41	86.96	43.2
갑	81,930	947	203	21.44	86.96	24.7
을	1,988	12	4	33.77		39.0
병	462,881	3,551	1,480	41.68		48.1
전등	44	0.08	0.05	66.72		77.0

자료 : 한국전력공사 전력경제처, 『전기요금제도 설명자료』, 1997. 1.

농사용 갑·을 ·병·전등의 구분 및 차별은 목적이 불명확하다. 농사용(을)의 수용가수는 1,988호에 불과하며 농사용 전등의 수용가는 44호에 불과하여 이들을 별도구분으로 운영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들의 농사용내 종별구분의 당위성을 재검토하고 비용구조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개선·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농사용 전력가격을 저렴하게 유지하는 것이 농업육성정책인지 소득정책인지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장기적으로 전력요금에 이러한 정책적 요소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13] 이는 앞으로 영세한 농민층이 아닌 대규모 기업농에게도 농사용 低價格을 적용하여 계속 보조할 것인지를 정하는 방향 및 기준 설정을 의미한다. 농사용 低價格政策이 소득정책적인 목적이라면 주택용의 50kWh 수용가에게 제공하는 소득정책적 저요금과 회수율이 일관되어야 하는데, 이를 비교해보면 현재는 주택용 50kWh 수용가의 원가회수율이 44.1%이고 농사용전반이 43.2%로서 서로 비슷하여 소득정책이라는 면에서는 서로 부합한다. 농사용 低價格政策이 농촌에 소득보조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비용보다 낮은 가격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수준 이상의 소비를 유도하므로, 가격을 원가수준으로 올려 효율적인 소비를 유도하되 소득보조는 농가 중에도 실제 저소득층에게만 직접적으로 보조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농사용전력의 판매수입은 1,687억원으로 전체의 1.3%를 차지하지만, 판매량은 4,510GWh로 전체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농업의 산업비중이 계속 낮아져온 가운데 농업이 전력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증가하였는데, 1970년에 농림어업이 전체 전력의 0.6%를 소비하였으나 1995년에는 2.1%까지 증가하여, 농

13) 농사용에 대하여 전력가격으로 정책지원을 하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뿐이다.

업용의 저가격정책이 소비증가를 낳았을 가능성이 있다. 참고로 OECD의 추세를 보면 농업용 전력이 1971년에 1.14%를 차지하다가 1994년에는 0.86%로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결국 한국의 농업용 전기소비 증가는 가격의 왜곡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일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② 기본요금을 사용시에만 부과

농사용 기본요금은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기간에는 부과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기본요금은 설비 및 송·배전에 대하여 부과하는 비용이므로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달에도 기본요금을 부과하여야 하며, 다른 종별에서는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기간에도 부과하고 있어 형평에 맞지 않고 있다.

Ⅲ. 電氣料金體系의 中短期 改善方案

1. 基本方向

장기적으로 한계비용방식으로의 근본적인 전환을 하기 위하여 전기의 가격체계가 중단기적으로 지향해야 할 기본방향은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 한계요금체계에의 근접화
▶ 정책적 왜곡의 최소화
▶ 수요관리 요금체계의 강화[14)]

14) 수요관리요금체계는 peak-load pricing을 통한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를 의

장기적으로 한전의 가격체계는 평균비용방식에서 한계비용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한계비용은 자원의 경제적 가치를 가장 올바르게 평가하고 있어 소비자의 소비변화에 따른 자원비용의 변화를 가장 잘 반영한다. 전력수요의 관리에 있어서도 소비자가 실제로 발전 및 송전시스템에 추가시키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한계비용의 개념이며 경제적 효율성을 가장 증진시키는 방법이다. 한계비용방식으로 근접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한전의 가격체계가 취하고 있는 용도별 구분을 전압별로 통합하여야 한다.

한계비용 가격체계에 근접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전기요금체계에 포함되어 있는 산업정책, 소득정책, 정치적 왜곡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경제발전단계에 따라 서비스업이 중요시되면서 과거에 중시되어오던 제조업 중심의 산업정책의 재검토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따라서 전기요금에 반영된 제조업 우대정책도 재검토되어야 한다. 농사용도 중기적으로 전기를 통한 정책적 지원을 줄여서 전압에 맞는 원가를 적용시켜야 하며 체계도 단순화하고, 농사용의 우대정책이 소득정책인지 농업정책인지도 명확히 하여 적용대상과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교육용이 따로 혜택을 받을 경제이론적 배경은 매우 약하므로 알맞은 전압으로 통합되어야 하며 이는 원래 교육용이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던 1992년 이전으로 회귀하는 것이다. 참고로 1974년 이전에는 용도별 구분이 주택용·일반용(전압 및 용량별 구분)·농사용·가로등 등 네 가지의 간단한 구분이었고 현재의 산업용·일반용·교육용은 모두 당시의 일반용에 속하여 있었다. 이 구분이 에너지 절약을 목적으로 그후에 도입된 용도별 구분

미한다. 수요가 많을 때 소비를 억제하도록 하는 것이 설비비용을 절약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증가시킨다. 에너지절약형 기계설비의 설치와 같은 장기적인 효율화는 요금구조의 조정보다 요금수준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에 비해 경제적 왜곡이 훨씬 적은 구분이며, 특히 일반용이 전압별로 구분되어 있어 본고가 지향하는 구분과 일치한다. 본고의 기본방향은 1974년 이전의 구분방식과 매우 흡사하다.

현재 주택용의 누진율은 매우 급격하여 에너지 절약과는 연계되지만 수요관리와 밀접히 관련되지 못하여 설비비용을 절약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한계비용은 물론 평균비용과도 커다란 괴리가 있다. 주택용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최저단계의 지원을 제외한 소득정책적 요소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비용과 동떨어진 소득정책적 누진을 없애고 대신 비용에 충실한 누진율을 적용해야 한다. 비용에 충실한 요금체계가 형평에 맞고 수요관리에도 적합하며, 현재의 소득정책이 지향하는 방향과 크게 다르지도 않다.

현재 산업용·일반용에 제공되고 있는 선택요금 I과 II는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에 있어 격차가 미미하므로 피크기의 수요관리를 위한 옵션이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 산업용 선택요금의 경우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에서 약간의 차이를 두어 큰 차별성 없이 자신에 맞는 요금구조를 소비자가 선택하는 정도이다. 한계비용에 입각한 요금구조에서는 장기간 사용자와 그 밖의 사용자간에 격차를 확대하여 선택요금의 폭을 대폭 개선하고 있다.

2. 細部方案

가. 산업용·일반용·교육용의 전압별 통합

전기의 공급비용은 사용자의 사용용도에 따라 차이나는 것은 미미한 반면, 계약전압에 따라 설비비용의 차이가 크게 나므로[15] 설비비용의 적정배분을 위해서는 전압에 따른 구분이 용도별에

15) 배전비용의 경우는 용도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비해 이상적이다. 이런 이유로 한계비용에 의거한 요금체계에서는 용도별 구분이 아닌 고압·중압·저압 등의 전압별 구분을 사용한다. 현재의 제도를 한계비용으로 전환하는 중간과정으로서 현재의 용도별 구분을 전압별로 서서히 통합·구분해나가야 한다. 특히 산업용·일반용·교육용은 통합한 후 그 안에서 전압에 의한 소구분을 해야 한다.[16)]

같은 소비형태를 가진 소비자에게는 같은 가격을 지불토록 하는 것이 소비자에 대한 공평성을 유지하는 기본방법이다. 용도별 구분을 할 경우 같은 소비형태를 가진 소비자도 전기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가에 따라 다른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며 이는 공평성에 저촉되게 된다. 또한 어떤 용도로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권장할만한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전력회사나 정부가 결정하는 것은 사회가 발전·변화하고 사회에의 기여도·생산성·효용이 복잡화됨에 따라 그리 단순하지 않다. 좋은 목적을 가진 제도도 다른 면에서는 또 다른 왜곡을 낳기 때문에 그 효용이 사회적 비용에 비해 그리 크지 않은 경우가 많다.

전기요금은 전력공급비용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최적이다. 따라서 소비자가 전기를 절약해서 줄이는 전기료는 절약으로 인하여 전력회사가 절약하는 시설절감액수 및 연료절감액수와 정

16) 검토자 중 한 분이 전압별 통합에 동의하면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첨부하였다. "전압별로 구분만 하는 경우 일반용(갑)·일반용(을) 또는 산업용(갑)·산업용(을)·산업용(병)의 구분이 전압별 구분과 일치하지 않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일반용과 산업용에서는 전압에 상관없이 수용가의 규모에 따라 구분하여 (갑)·(을)·(병)으로 나누고 있다. 현재 (을)·(병)으로 분류된 대수용가에 우선 시간대별 구분이 가능한 계량기를 설치하고 이에 따라 시간대별 요금의 격차를 두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시간대별 요금은 한계비용계산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측면에서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적 구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용도별 구분을 통합하여 전압별 구분으로 전환하면서 시간대별 차등요금을 부과하되 시간대별 구분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식 계량기의 보급이라는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해야 한다."

확히 일치하여야 한다. 소비자 타입에 따른 용도별 구분시에는 이러한 한계비용원칙이 유지될 수 없으며 따라서 소비자에 대한 공평성이 유지되지 않고 경제적 효율성도 달성할 수 없다.

경제정책이 제조업 중심의 정책에서 서비스산업을 포함한 다양한 산업의 공통적인 발전으로 변화해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전기요금에 있어서는 일반용에 대한 비용부담을 감소시키는 방향을 의미한다. 또한 산업용에 계속 낮은 요금을 적용하여 계속 혜택을 주는 한, 수요관리에서 소비의 60%를 차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다른 부분의 절약만을 강조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현재 서비스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국민총생산의 42%에 이르고 있으며 건설업을 포함할 경우 53%에 이르고 있다. 이에 반해 제조업은 전기사용의 60%를 차지하지만 GDP의 29%에 불과하다. 이는 국민생산의 42%를 차지하는 주요부분에 높은 전기요금을 적용시켜 부담을 지우고 있는 셈이다. 서비스산업에는 음식·음료·숙박 등 소비성 산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유통, 통신 등 미래의 유망산업이 포함되어 있어 이에 불리한 비용을 요구할 이유는 없다.

현재 구분하고 있는 교육용을 다른 일반용과 특별히 구분하여야 할 근거는 매우 희박하다. 교육을 장려하여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는 교육에 대한 직·간접적인 정부보조로 지원해야 하며, 교육뿐 아니라 연구, 사회보장시설, 병원 등 장려와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많이 있다. 전기가격체계에서 교육용을 따로 구분할 근거는 거의 없으며 소비전압에 맞는 수준으로 산업용·일반용과 합병하여야 한다.

나. 산업용·일반용의 계시별 차등폭 확대 및 선택요금 확대

현재 평균비용 산정방식에 의거한 요금구조에서는 산업용·일

반용의 계시별 차등폭이 매우 작으며 선택요금의 차별성도 부족한 형편이다. 현재 산업용에서 선택 I과 선택 II의 기본요금은 3,310원과 3,810원, 3,070원과 3,530원으로 그 차이는 13% 정도에 불과하다. 전력량요금(고압 A)도 선택 I은 27.10~80.70원이고 선택 II는 24.60~78.20원으로 둘간의 차이는 미미하다. 일반용에서도 선택 I과 선택 II 사이의 기본요금의 차이는 13% 정도이며 전력량요금(고압 A) 선택 I은 38.80~115.70원이며 선택 II는 35.40~112.20원이다.

『요금체계보고서』에서 예시한 한계비용에 의거한 가격표에서는 현재의 선택 I과 선택 II에 해당하는 장기·중기·단기 사용자간의 기본요금의 격차가 현저히 크며 계시별 전력량요금의 격차도 크다. 고압 중기사용자의 기본요금(38,535원)은 장기사용자의 기본요금(79,714원)에 비해 48%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중압의 장기사용자의 기본요금(99,696원)에 비하여 중기사용자의 기본요금(66,832원)은 67% 수준이고 단기사용자(50,982원)는 51%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현재의 가격구조에서의 13%의 차이에 비해 현격히 큰 수준이다.

한계비용 요금구조에서 계시별 전력량요금은 고압의 중기에서 80.23~20.55원의 격차를 가진다. 현재의 계시별 최저요금과 최고요금의 격차가 산업용과 일반용 모두 2.98~3.18배에 이르는 데 반하여 한계비용의 계시별 전력량요금의 격차는 3.65~3.90배에 달한다. 이 정도의 가격차이에서는 자신의 소비패턴에 알맞은 요금구조를 선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요금구조에 따라 자신의 소비패턴을 변화시켜 에너지 절약 및 피크기 설비절약에 기여할 인센티브도 충분히 커지게 된다. 이러한 큰 격차는 한계비용이 하계 및 피크기에 충분한 기회비용을 반영하고 대신 경부하기에는 그에 알맞은 낮은 기회비용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

여 피크기에는 전력 사용이 억제되고 대신 비피크기에는 전력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낮은 전력량요금을 적용하게 되어, 비용에 입각한 요금구조는 자동적으로 수요관리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한계비용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현재의 비용체계를 조정하려면 먼저 선택요금을 다양화하여야 하며 차별성도 확대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현재의 선택 I과 II 요금에 있어 기본요금 및 전력량요금의 격차를 확대하여 장기사용자와 중기사용자를 구분하여야 하며, 단기사용자를 위한 추가적인 요금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계시별 전력량요금도 비용을 반영하는 수준에서 격차를 확대하여 요금이 한계비용도 반영하면서 동시에 수요관리도 이룰 수 있는 체계로 접근시켜야 한다.

다. 요금의 비용 근접화

현재 용도별 요금의 대부분은 평균비용 원가와 괴리되어 있는 상황이다. 농사용요금은 평균비용의 43%에 불과하고 산업용요금은 평균비용보다 약간 낮으며 일반용과 교육용은 평균비용보다 높은 상태이다. 주택용은 평균비용보다 약간 높은 상태인데, 그 수준보다 주택용 내의 누진율이 과다한 것이 문제이다. 한계비용 요금체계는 요금의 수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기보다는 체계에 원칙을 제공하므로 현재의 요금구조를 한계비용에 의거한 가격체계에 근접시키기 위하여 일단은 평균비용의 원칙에 충실하는 것이 첫번째 과정이다.[17]

한계비용에 의한 가격체계는 일단 가격구조를 제시한 후 한전의 재무전망 및 수요에 맞추어 가격수준을 조정하므로, 현재의

17) 한계비용과 평균비용방식은 그 근거를 미래에 두느냐 과거에 두느냐의 차이로, 과거의 투자패턴과 미래의 투자패턴이 큰 차이가 없다면 그리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 기반하여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재무전망을 고려하지 않고 계산된 『요금체계보고서』의 한계비용 가격체계를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그러나 한계비용가격은 미래의 투자를 기준 삼은 체계이고 평균비용은 과거의 투자를 기본으로 계산한 구조이므로 근본적으로 커다란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 이 점은 『요금체계보고서』의 한계비용 가격체계가 현재의 평균비용 요금구조와 완전히 다른 체계가 아니라는 점을 보아서도 타당하다. 따라서 농사용과 산업용은 중기적으로 상향조정하여 평균비용에 근접시키는 것이 한계비용에도 근접시키는 것이다. 농사용 및 산업용은 수준의 상향조정뿐 아니라 계시별 부하에 따른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의 조정을 통하여 원가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일반용과 교육용은 피크기의 기여도 및 냉방수요를 반영하도록 계시별 원가에 맞게 조정하되,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해야 할 것이며 주택용은 수준의 조정보다 내부 누진율을 낮추는 것이 첫번째 과정이다. 저소득층을 위한 50kWh 내지 100kWh 이하의 할인은 전기가 필수재화인 이상 계속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냉방부하에서 주택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18.8%라는 점과 전기를 많이 소비하는 주택이 고소득이면서 냉방부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서 냉방부하에 따른 설비비용의 추가부담을 반영한 누진율은 계속 필요할 것이다. 한계비용의 기본원칙은 비용 이상의 부담을 소비자에게 무는 것이 아니라 비용만큼 부담을 시키는 것이다.

라. 농사용의 단일화

현재 농사용은 갑·을·병과 전등의 네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농사용(갑)은 양수·배수펌프 및 수문조작에, 농사용(을)은 육묘 및 전조재배에, 농사용(병)은 기타고객, 농사용 전등은 해충구제

용 및 유아용 전기이다. 이러한 네 가지 구분은 목적이 불명확하며 구분별 수용가도 많지 않기 때문에 하나로 단일화하여야 한다.

농사용(을)의 수용가수는 1,988호에 불과하고 농사용 전등의 수용가는 44호에 불과하여 이들을 별도 구분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또한 양수·배수펌프와 육모 및 전조를 전기용도로서 따로 구분할 경제적 근거는 거의 없다. 농사용은 장기적으로는 한계비용에 따라 알맞은 전압으로 다른 용도와 통합해야 할 것이다.

단일화 이후의 가격은 한계비용에 근접하도록 상향조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천천히 인상하여야 하며 단계별 인상계획을 미리 공표하여야 한다. 한계비용에 의한 전압별 요금으로 전환하면 소득정책적 요소를 어차피 쓸 수 없게 되므로 이에 대비한 가격수준의 점진적 현실화를 미리 실행해야 한다. 현재 농업용에는 소득정책적인 면이 있으므로 주택용과 비슷한 원가에 근거한 약한 누진율을 적용하는 것도 한 가지 옵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농사용에서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기간에는 기본요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으나 이는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수정해야 한다.

마. 주택용의 체계조정

주택용요금은 현재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7단계 요금제도에 높은 누진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수요관리를 위하여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많은 요금을 내야 한다는 취지이나 피크기와 비피크기의 구분없이 높은 요금을 적용하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외국의 주택용요금은 주로 3단계로 구분되어 있고 몇 단계가 이상적인지에 대한 경제학적 원리가 없는 상황하에서 우리나라 소비자의 소비패턴 및 과거부터의 제도운영을 고려할 때 우리나

라에는 4단계의 구분이 적정한듯하다. 먼저 50kWh 내지 100kWh 이하의 저소득자를 위한 최저단계는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전기가 필수재화라는 점에서 모든 국민에게 생존을 위한 일정한 공급은 보장을 해주어야 하며 전기를 조금 사용하는 계층 대부분이 저소득층이라는 점에서 타당성을 가진다. 50kWh 이하의 사용자가 전체가구의 8.7%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중 전출·미분양 등 일시적인 사유로 인해 空家나 다름없는 0~20kWh 사용가구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1997년 4월 한전이 동대전지역의 생활보호 대상자 50호를 임의추출한 결과 평균사용량이 131kWh로 상당히 높으므로 50kWh 이하의 사용자는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가구와는 다른 유형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지원대상을 50kWh에서 100kWh로 상향조정하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사·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시간별 사용량 측정이 되지 않는 주택용의 기본요금은 배전비용을 회수하는 정도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음 단계는 월 101~200kWh까지의 사용자로서 월평균 156kWh (1995년) 사용자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 구간은 주택용 소비자의 과반수인 53.9%가 해당된다. 매년 월평균 사용량이 증가함을 고려할 때 이 소비층은 평균 또는 그 이하의 사용자로서 자신의 비용에 상응하는 요금을 부과하면 될 것이다. 다음 단계는 월

〈표 25〉 주택용의 구분 제안(1998년 소비분포에 의거)

사용량별 (kWh)	가구수 (천가구)	%	사용량 (천kWh)	%	전기요금 (억원)	%
100이하	3,541	24.1	204,013	8.9	103	5.0
101~200	7,948	53.9	1,175,964	51.3	880	42.1
201~300	2,459	16.7	583,259	25.4	568	27.2
301이상	793	5.3	329,926	14.4	538	25.7

201~300kWh 구간의 사용자로 평균 이상의 소비를 하며, 여기에는 주택용 소비자의 16.7%가 해당되고 사용량으로는 25.4%를 차지한다. 마지막 단계는 월 301kWh 이상을 소비하는 계층으로 이는 주택용 소비자의 5.3%를 차지하며 소비량에서는 14.4%를 소비하고 있다.

현재 주택용의 계량기는 시간별 측정을 할 수 없어서 피크부하시 기여율을 정확히 알 수 없으며 따라서 기여율에 따른 요금부과를 할 수 없는 형편이다. 그러나 주택용도 피크시간에 사용이 증가함에도 여기에 상응하는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면 원가충실의 원칙을 어기게 된다. 따라서 피크기에 원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을 추정하여 이에 따른 추가요금의 부담을 지우는 것이 원가에도 충실하며 자원을 절약하는 방법이다. 하계 피크기에 특히 전기소비를 증가시키는 것은 에어컨이며, 전력량이 월 250kWh 정도의 수용가가 에어컨을 구비하는 시점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여름철에 이 수준 이하 소비량을 가지는 소비자에게는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원래의 소비량이 피크시에 기여하는 만큼만 추가로 부담케 하고 이 이상의 소비를 하는 소비자는 에어컨 사용으로 피크시간대에 추가소비가 있음을 간주하여 원가상승만큼의 추가부담을 시키는 것이 이상적이다. 기본적으로 하계 피크기는 자신의 전기소비량이 비피크기와 비교하여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스템 전체의 피크에는 기여하는 바가 있으므로 비용상승에 따른 추가분을 부담하여야 한다. 새로 제안한 요금구조가 250kWh를 기준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200kWh 이상의 소비자는 이미 평균 이상의 소비를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준선을 200kWh로 잡는 것이 좋을듯하다. 따라서 200kWh 이하의 소비자는 소비가 증가하지는 않더라도 피크기여도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추가요금을 지불시키고 200~

〈표 26〉 주택용 하계수요관리요금

주 택 용	하계시의 가격구조
100kWh 이하	타계절과 같음
101~200kWh	타계절보다 아주 약간 높음
201~300kWh	타계절보다 약간 높음
301kWh 이상	타계절보다 많이 높음

300kWh의 소비자와 301kWh 이상의 소비자는 피크기의 피크시간의 기여도가 높을 것이라는 가정 아래 하계요금에 누진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하계수요관리요금).

지금까지는 주택용에 있어 계절별 차등이 없었지만 이와 같이 구분단계를 냉방수요와 연계시켜 재구성할 경우 하계수요관리요금을 도입하여 여름철(7·8월)에는 하계피크기에 해당하는 요금을 따로 적용시켜 수요를 관리하는 것이다. 물론 주택용 계량기에는 시간별 측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름철중에도 경부하 시간대에 전기를 많이 소비한 수용가에게도 높은 전력량요금을 적용시킨다는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여름철 비피크기는 타계에 비해서 부하율이 높으므로 높은 요금을 적용하는 데 큰 무리는 없을듯하다. 하계수요관리요금은 200kWh 이상의 소비자에게는 높은 비율로 적용하고 그 이하의 소비자는 에어컨을 가동시키지는 않지만 피크기여도가 있으므로 타계에 비해서는 높은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경제원리에 타당하다. 이는 부하율이 연중 일정한 산업용도 하계 피크기에는 높은 요금을 부과하여야 하는 원리와 같다.

가장 높은 단계인 301kWh 이상의 소비자에게는 하계수요관리요금은 물론이고 에너지 절약과 현제도의 급격한 전환으로 한전의 수입이 급격히 저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통시기에도 약간의 누진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누진율은 현재

와 같이 급격한 것이 아닌 한계비용 요금구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적용되어야 할 한계비용에 기반을 둔 낮은 누진율이 되어야 할 것이다.

주택용에 있어 기본요금이 너무 낮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주택용은 현재 월별 사용량만 측정될 뿐 계약전력이나 계시별 구분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 주택용에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이 모두 누진적인 것은 타당성이 없다. 계약전력이 없고 계시별 구분이 되지 않는다면 주택용 기본요금은 설비비용 중 배전비용만 회수하여야 하고 설비비용의 나머지 부분은 변동비와 함께 kWh와 연동되는 전력량요금으로 회수하도록 주택용 요금구조를 변화시켜야 한다.[18] 기본요금이 배전비용만 회수하게 되면 기본요금은 사용량과 관계없이 모든 수용가에 계약전력과 관계가 있는 일정한 금액이 부과될 것이다. 전력량요금은 연료 및 운영비뿐 아니라 설비비용도 회수하여야 하기 때문에 하계수요관리요금은 한계비용에 의거한 전력량요금보다 높은 수준이 될 것이며 타계의 전력량요금도 조정되어야 한다.[19]

바. 계시별 차등요금 시간대 단순화

현재의 일반용(을)과 산업용(병)의 계시별 차등요금은 여름철, 봄·가을철, 겨울철 모두 경부하, 중간부하, 최대부하를 가지며 하루 24시간내에서 여름철, 봄·가을철에는 중간부하는 3부분, 최대부하 기간대는 2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중 단순화가 필요한 곳은 봄·가을철의 구분과 여름철의 중간부하(12:00~14:00)이다.

---

18) 여기에는 배전비용이 전기사용량과 비례하지 않고 일정한 금액이라는 가정이 필요하다.

19) 한계비용에 의거한 요금표는 주택도 계약전력에 의한 일정한 전압을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을 계산한 것이다.

먼저 봄·가을철(4, 5, 6, 9월)은 현재 경부하(22:00~08:00), 중간부하(08:00~10:00, 12:00~14:00), 최대부하(10:00~12:00, 14:00~17:00)로 구분되어 있다. 이 시즌의 최대부하시의 부하는 보통 21,000천~22,000천kWh이다. 그러나 이 부하수준은 여름시즌의 중간부하기의 21,000천~26,000천kWh에 훨씬 못 미치며 겨울의 중간부하기의 20,000천~23,500천kWh에 전반적으로 미치지 못한다. 부하수준에 맞는 시간대별 구분을 위해서는 봄·가을의 최대부하기는 중간부하기에 더 적합하다. 따라서 봄·가을의 최대부하기는 중간부하기로 흡수합병하고 요금수준을 두 부하기 중간의 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즉, 봄·가을에는 최대부하 시간대는 없어지고 중간부하와 경부하 시간대만 존재하는 것이다.

이는 대만, 일본, 프랑스의 예를 보아도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대만에는 10~5월에 輕負荷期와 重負荷期만 있으며, 일본(중부전력)도 10~6월에는 輕負荷期와 重負荷期만 가지고 있다. 프랑스의 EDF에도 중간시즌인 3~6월과 9~11월에는 輕負荷期와 重負荷期만 있으며, 하계인 7~8월에는 24시간 내내 輕負荷期로 유지하여 부하에 충실한 구분을 가지고 있다.

여름시즌의 중간부하대는 08:00~10:00, 12:00~14:00, 17:00~22:00로 3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중 점심시간에 해당하는 12:00~14:00에는 25,000kWh 이상의 부하가 걸리므로 다른 중간시간대보다 훨씬 높은 부하대를 가질 뿐 아니라 동계의 피크가 25,000kWh 이하로 부하가 걸리므로 25,000kWh는 시스템 전체의 피크기로 보아도 무방하다. 따라서 여름철 최대부하기를 10:00~17:00로 단순화하는 것이 적정하다. 본고에서 주장하는 대로 시간을 재구성하면 〈표 27-1〉, 〈표 27-2〉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계시구분의 단순화는 요금수준을 부하수준과 완전히 일치시키

〈표 27-1〉 계절별·시간대별 구분 제안 I

구 분	여름철	봄·가을철	겨울철
	7~8월	4~6월, 9월	10월~익년 3월
경부하 시간대	22:00~08:00	22:00~08:00	22:00~08:00
중간부하 시간대	08:00~10:00 17:00~22:00	08:00~22:00	08:00~16:00 20:00~22:00
최대부하 시간대	10:00~17:00	—	16:00~20:00

〈표 27-2〉 계절별·시간대별 구분 제안 II

구 분	여름철	봄·가을철	겨울철
	7~8월	4~6월, 9월	10월~익년 3월
경부하 시간대	22:00~08:00	22:00~08:00	22:00~08:00
중간부하 시간대	08:00~10:00 17:00~22:00	08:00~22:00	08:00~22:00
최대부하 시간대	10:00~17:00	—	—

지는 못한다는 단점을 가지기는 하지만 계시구분의 단순화는 대신 소비자의 반응을 유도하기 훨씬 쉬워진다. 소비자가 요금계산을 하기 쉬워지고 평소에 시간구분을 기억하기 좋게 시간구분을 디자인하는 것이 요금구조에 대한 소비자의 대응을 유도하기 쉬워지는 것이다.

겨울철의 최대부하도 여름철의 중간부하에 해당하기 때문에 겨울철의 최대부하를 중간부하와 합하여 중간부하로 바꾸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이때 봄·가을철의 중간부하 시간대와 겨울철의 중간부하 시간대는 부하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요금수준을 가져야 할 것이다. 각 계시별 시간대 셀(cell) 하나하나가 똑같은 부하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모두 다른 요금수준을 가지는 것이 합리적이다. 시간대별 구분은 부하수준이 계속 변화하며 산업용과 일반용의 부하수준이 다르고 전기사용설비가 계속 변화함에 따라 계속적인 검토와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附錄〉 「電氣料金體系의 合理化方案」에서의 限界費用計算

『요금체계보고서』에서는 프랑스 EDF의 한계비용 가격방식을 모델로 하여 우리나라의 한계비용가격체계를 제시하였다. EDF의 요금체계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실현하는 동시에 한계비용 방식이 안고 있는 수지균형과 재무적 안정성의 문제도 극복할 수 있는 요금체계로 평가된다. EDF의 요금체계는 수십년동안 시행해오면서 축적되어온 수요패턴 및 비용구조, 소비자의 반응 등에 대한 엄밀한 분석과 시행착오적 경험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그간 한계비용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자료는 그리 많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요금체계보고서』에서는 단순화된 EDF양식을 기본틀로 하여 실제 한전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고 관련된 국내 연구결과를 이용하되, 필요할 경우 주요변수의 값에 대해서는 순수한 가정에 의존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제약으로 제시되는 가격체계는 현실적인 적용가능성에 있어 극히 제한적인 의미만을 가지며, 현행 요금방식과의 차이를 선명히 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1) 수요예측은 한전의 2010년까지의 수요예측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2) 개발계획에 있어 발전설비투자는 현재의 kWh당 투자비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송·배전설비투자는 한전의 투자계획을

참조하였으나 2006~2010년은 자료가 없어서 2001~2005년까지의 평균증가율을 그대로 연장하였다.

3) 한계설비비용의 계산에서 피크설비로 가스터빈을 선택하였다. 할인율은 8.5%로 가정하였고, 연료비용도 향후 변화가 없다고 가정하였다. 설비예비율은 18%, 설비가동률은 85%, 가동기간은 20년으로 가정하였다.

4) 송배전설비의 한계비용계산에서 내구연한은 45년, 가동비용은 투자의 1%로 가정하였다.

5) 한계연료비용의 계산에서 계절은 하계: 7, 8월, 춘·추계: 4, 5, 6, 9월, 동계: 10, 11, 12, 1, 2, 3월로 구분하였고, 시간별로는 최대부하 08:00~18:00, 중간부하 18:00~22:00, 경부하 22:00~08:00으로 구분하였다.

6) 한계설비비용 및 한계연료비용의 계산에서 송전손실률은 소내 및 고압손실률 0.076, 중압손실률 0.033, 저압손실률 0.016을 사용하였다.

7) 소비자에 대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고압의 장기간 사용자는 부등률이 1, 중기간 사용자는 최대 7,000~최소 5,640시간으로 가정하였다. 중압의 중기간 사용자는 최대 5,500~3,000시간, 단기간 사용자는 2,400시간 이하라 가정하였다. 또한 저압의 상업용의 피크기여도는 0.40, 평균사용시간 1,940시간이라 가정하고 주택용의 피크기여도는 0.34, 평균사용시간 3,100시간이라 가정하였다.

위와 같은 자료 및 가정을 이용하여 EDF방식의 한계요금체계를 계산한 결과 〈부표 1〉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부표 1〉 한계비용에 의거한 요금체계

타 입	연간기본 요금 (원/kWh)	전력량요금(원/kWh) 하 계 최 대	하 계 중 간	하 계 경부하	춘·추계 최 대	춘·추계 중 간	춘·추계 경부하	동 계 최 대	동 계 중 간	동 계 경부하
고 압										
장 기	79,714	70.84	30.32	18.83	42.41	30.23	18.83	50.54	30.23	18.83
중 기	38,535	80.23	38.74	20.72	51.05	39.76	20.57	59.06	39.41	20.55
중 압										
장 기	99,696	73.26	31.26	19.47	43.86	31.26	19.47	52.26	31.26	19.47
중 기	66,832	82.05	39.84	22.10	52.40	39.67	22.03	60.51	39.75	21.94
단 기	50,982	90.84	45.57	24.75	62.37	49.77	25.01	70.06	48.24	24.83
저 압										
일 반	5,124	84.91								
주 택	4,356	73.68								

[부도 1] 주택용 요금구조 : 총요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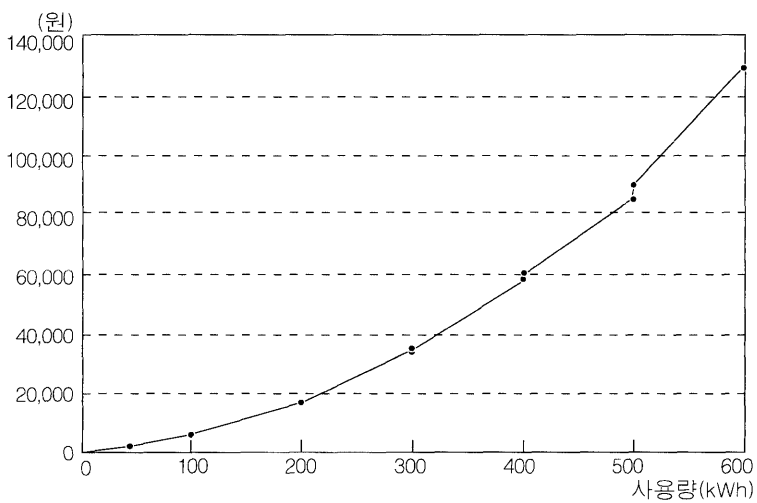

[부도 2] 주택용 요금구조 : 평균요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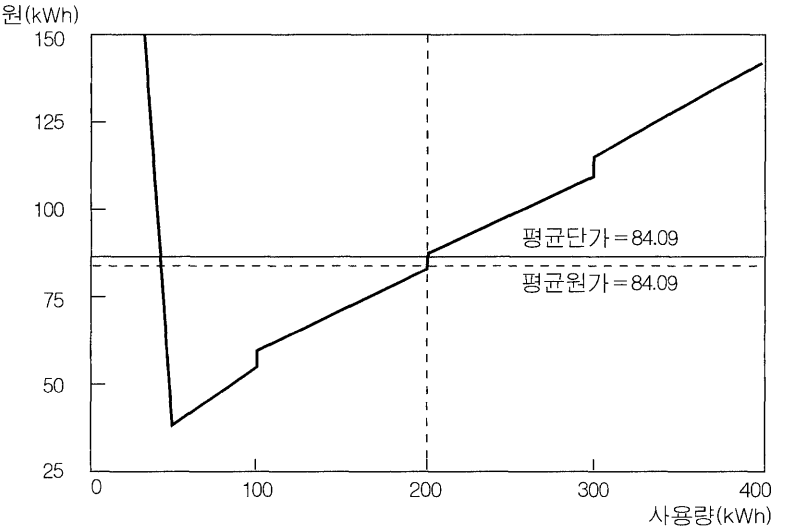

[부도 3] 주택용 수요구조 : 규모별 분포(가구수, 사용량, 요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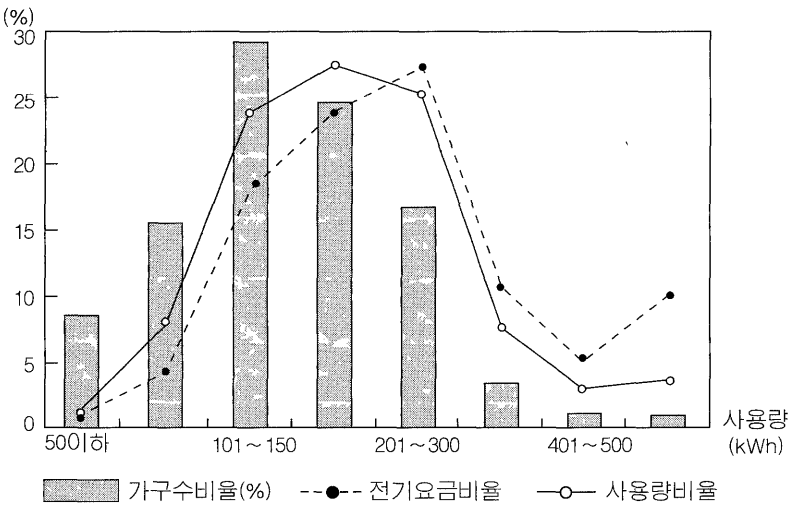

[부도 4] 주택용 수요구조 : Lorenz 곡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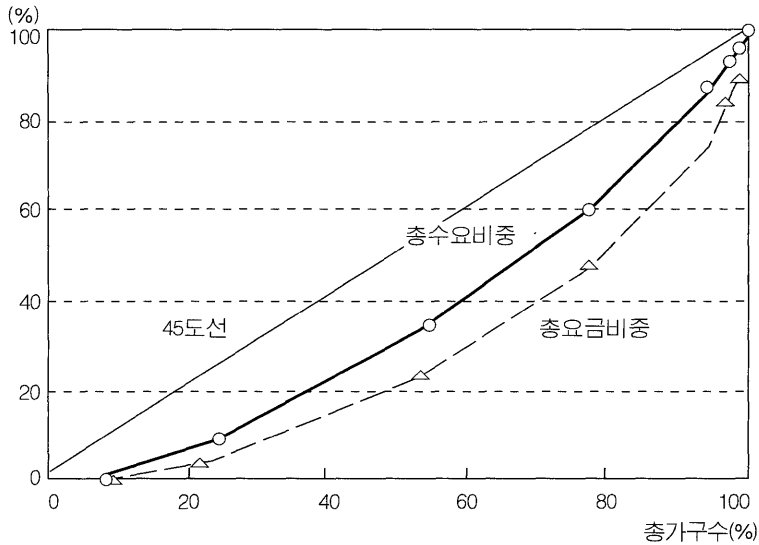

주 : 총가구수 %는 소량사용가구부터의 누적률(%). 따라서 로렌츠 곡선은 사용량(수요)기준 하위 총 X% 가구의 총수요/총요금 부담 비중을 나타냄.

▷ 參 考 文 獻 ◁

金壬鎬, 『電氣料金制度의 改善方向에 대한 硏究』, 한국전력 제13기 경영대학원과정, 1995. 12.

朴振根 외, 『電氣料金이 國際競爭力에 미치는 影響硏究』, 국제무역경영연구원, 1994. 6.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백서』, 1995.

孫良薰, 『電氣料金의 中長期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연구보고서 97-02, 에너지경제연구원, 1997.

한국개발연구원, 『電氣料金體系의 合理化方案 硏究』, 한국전력 연구용역보고서, 1997. 6.

한국산업경제연구원, 『電力負荷豫測 및 管理方案硏究』, 한국전력 연구용역보고서, 1986. 11.

_____, 『電氣料金 體系 및 水準에 관한 硏究』, 한국전력 연구용역보고서, 1991. 9.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의 이론 및 정책 방향』.

한국전력공사 전력경제처, 『전기요금제도 설명자료』, 1996. 9 및 1997. 1.

_____, 『요금조정 참고자료』, 1996. 5.

Ackerman, Eric and Profozich, *Innovative Rates in the Investor-owned Electric Utility Industry*, Edison Electric Institute, 1988.

EDF, *Blue, Yellow, Green Electricity Tariffs 1996*, 1996. 6.

Barakat and Chamberlin, Inc., *Rate Design: Traditional and*

Innovative Approaches, EPRI CU-6886 Project 2343-4, 1990. 7.

Brown, Stephen J. and David S. Sibley, *The Theory of Public Utility Prici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6.

Walters, Frank S., *The Art of Rate Design*, Edison Electric Institute, 1984.

Wilson, Robert, *Nonlinear Pricing*, Oxford University Press, 1993.

論 評

孫 良 薰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이 논문은 우리나라 전기요금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공공요금정책의 일환으로 오랜 기간동안 정부의 강한 가격규제하에 있었고, 그로 인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위협할 정도로 요금체계가 왜곡되어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구체적인 정책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정책담당자와 생산자 및 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제도는 평균비용 요금정책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발전, 송전, 배전의 단계를 거치면서 생산에 소요된 비용을 사용량으로 나누어 원가를 계산한 다음, 요금의 종별로 나누어 부과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다. 용도별로 산업용, 주택용, 일반용 등으로 나누어 차별적 요금을 부과하고, 다시 이를 세분화하여 전압별, 계절별, 시간대별로 다른 요금체계를 적용한다. 요금체계의 구분은 공급비용과 전력부하의 패턴에 따라 일정한 가정하에 비용을 구분하여 부과하고 있다.

전기요금은 70년대 이후 약 30차례에 걸쳐서 개정되었다. 전기요금을 조정해야 하는 주요 요인은 연료비 및 환율에 따른 원가의 변동이나 발전설비의 기술진보로 전력생산방식이 진보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그 외에도 전원개발을 위한 자금의 조달이나 공기업의 투자보수율 확보를 위하여 전기요금을 조정한 바 있다. 전기요금의 조정은 시장의 원리에 의한 조정이라기보다는 공공

요금의 범주에서 상기 요인들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의 검토라는 입장을 견지하였기 때문에 매우 경직적인 요금결정 메커니즘을 갖게 된다.

원가의 변동에 대하여 경직적인 전력요금 결정방식은 경제정책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정책목표와 때로는 상충되고, 때로는 우선순위에서 낮게 평가되어 상당폭 왜곡되어 왔다. 물가의 상승을 억제하기 위하여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등의 저가격 정책이 지속되었으며, 저렴한 수준의 요금으로 산업용 동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산업용 전력요금을 낮게 유지하는 정책을 펴왔다. 이 밖에도 소득분배정책의 일환으로 주택용 전력에 대하여 지나치게 누진적인 요금을 부과해왔고, 농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저렴하게 농사용 전력을 공급하는 등 전기 소비구조를 왜곡시키는 요금체계를 갖게 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용도별 요금의 현황과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전기요금체계의 중단기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주택용 요금의 누진체계 및 지나친 누진율에 대하여 단순화 및 비용근접화를 통한 개선과 지나치게 세분된 주택용 요금구조의 개선을 제시하고 있다. 일반용요금의 경우에도 비용과의 괴리를 보이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해 계시별 차등폭의 확대나 선택요금제도의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산업용의 경우에도 요금과 비용의 괴리가 크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계시별 차등폭을 확대하거나 선택요금제도를 강화할 것을 추천하고 있다. 이 밖에 산업용, 일반용과 교육용 등으로 용도별 구분을 없애고 공급원가 중심의 전압별 통합을 권고하고 있다. 전압별 통합은 전기요금체계에 포함되어 있는 산업정책, 소득정책, 혹은 정치적 왜곡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전기소비를 용도에 따라 어떤 용도는 권장하고 또 다른

용도는 억제하는 것은 전기요금의 기능이 아니라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경제사회가 결정해야 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전압별 통합을 권고하고 있다.

이 논문은 몇 가지 측면에서 파격적인 요금구조조정을 제의하고 있다. 전기요금의 조정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그 골격은 오랜 기간동안 고정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평균비용방식의 요금체계에서 장기적으로 한계비용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한계비용 요금체계에의 근접화, 정책적 왜곡의 최소화, 마지막으로 수요관리 요금체계의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하여 전압별 통합이나 계시별 차등폭 확대 및 선택요금 확대를 제시하였다. 전기요금체계를 개선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정책방향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점에서 중요한 기여라고 판단된다.

전기요금의 결정은 두 가지의 상반된 목표의 적절한 수용이라고 할 수 있다. 첫번째의 목표는 요금정책의 장기적인 방향을 장기한계비용에 부합하도록 결정하여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달성하고 공공기업인 전력회사의 재무구조를 견실하게 하는 일이다. 이에 준하는 또 다른 목표는 다른 경제정책과의 조화라는 목표이다. 현실적으로 두 가지 목표는 대개의 경우 서로 상충되는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에 정책의 결정이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시장에 의한 결정이 아닌 정책적 결정에 의해 정해진 요금을 생산자와 소비자가 기꺼이 수용하는 데는 상당한 설득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우리나라 전기요금체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시도하고 파격적인 구조의 조정을 주장하는 논거를 외국의 사례와 기존의 연구결과, 그리고 경제이론이라는 직관에 의거하여 정책방향을 도출하고 있다. 이해관계와 정책방향의 상충이라는 환경

에서 설득력을 가지기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다. 회계장부의 비용에 기초하여 계산되는 평균비용 계산법은 현재시점의 실질적인 전기의 경제적인 가치와는 매우 다를 수밖에 없다. 회계장부의 작성은 시간에 따른 경제적 가치의 변동을 반영하는 데는 매우 취약하기 때문이다.

이론적인 전력가격의 책정원리에 의하면 한계비용원리에 입각하여 요금을 책정할 때 사회적인 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다. 투자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측면에서 이론적인 우위를 가질 뿐만 아니라 선진국들이 채택하는 방법이다. 물론 제한된 가정과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많이 부족하여 계산의 부정확성을 피할 수는 없지만 가장 설득력이 있는 방법임은 부인할 수 없다.

이 논문에서는 부록에서 한계비용의 계산결과를 요약하였고, 본문에서도 부분적으로 이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한계비용의 계산은 프랑스의 EDF의 한계비용 가격방식을 모델로 하여 한계비용 가격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한계비용을 실제 계산하는 데는 전력공급 및 수요에 대한 아주 세밀하면서도 방대한 양의 자료가 요구된다. 현행 요금체계에 대한 일차적인 분석과 이를 기초로 한 대안제시보다는 기초자료의 확보와 이의 정밀도를 향상시키는 작업이 더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향후의 연구에서 이런 방향의 개선을 기대한다.

金 仁 奎

(한림대 경제학과 교수)

이 논문은 현재 한국전력이 채택하고 있는 평균비용방식에 의거한 용도별 요금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중단기적 개선의

기본방향으로 한계요금체계에의 근접화, 정치적 왜곡의 최소화 그리고 수요관리 요금체계의 강화라는 세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현행 전기요금체계는 저자의 주장대로 지난 개발연대 정부주도의 산업화 과정에서 산업정책, 소득정책 그리고 농촌지역 등에 대한 정치적 고려 등을 이유로 심하게 왜곡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 논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전기요금체계가 보다 효율적인 한계요금방식에 기초한 요금체계로 전환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다수의 연구자들, 예컨대 이 논문이 인용하고 있는 손양훈(1997) 등도 비슷한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전력과 같은 자연독점(natural monopoly)산업에 대한 가격규제 및 가격책정의 문제는 산업조직론에서 오랫동안 다뤄온 주제이다. 특히 전기요금에 대한 적정가격의 책정문제는 지금도 계속 논의되고 있는 이슈이다 보니 관련 문헌들이 상당히 풍부하다.

본 논평자는 저자가 이러한 관련 문헌들을 충분히 이해·습득한 뒤 한국적 현실에서의 전기요금체계의 문제를 분석·비판하고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구해주기를 기대했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관련 문헌들이 지금껏 쌓아올린 성과의 활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저자가 이 논문에서 보이고자 하는 주장들이 과학적 객관성보다는 저자 자신의 주관적·규범적 논리에 많이 기울어져 있다.

우선 저자가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정책목표의 혼선만 하더라도, 저자 역시 무엇을 정책목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리고 각각의 정책목표에 따른 적절한 요금구조는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혼선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혼선은 논문의 전체적인 구성에도 영향을 미쳐 글이 전반적으로 다소 방만하고 산만하다. 따라서 저자가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하게 드

러나지 않고 있다. 선진국의 전력요금 산정방식과 더불어 전기요금에 대한 적정가격책정 관련 문헌들을 통해 저자가 제시하고자 했던 중단기 정책방향의 논리적 타당성을 먼저 보였더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저자 주장의 논리적 근거가 뚜렷했더라면 제Ⅱ장에서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 현행 전기요금체계의 문제점들이 간단명료하게 처리될 수 있었을 것이다. 저자가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산업정책에 기초한 요금산정을 예로 들자면, 동일한 공산품 생산에 소요되는 전력사용량의 국제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제조업 위주의 전기요금체계가 초래한 제조업의 전기사용의 비효율성을 구체적이면서도 간단하게 보여줄 수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저자가 제Ⅲ장에서 제시한 세 가지 중단기 개선의 기본방향이 서로 중복되는 등 혼선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책적 왜곡의 최소화"라는 기본방향은 "한계요금체계에의 근접화"라는 기본방향의 필요조건이지 병렬적인 기본방향이 될 수는 없다. 그리고 "한계요금체계에의 근접화"와 "장기적으로 한계비용방식으로의 근본적인 전환" 역시 중기적이냐 장기적이냐의 차이가 분명하지 않다. 본 논평자의 견해로는 예컨대,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요금체계"를 궁극적이고 장기적인 정책목표로 설정한 다음 이의 달성을 위한 중단기 개선방향으로 "정책적 왜곡의 최소화를 통한 한계요금체계에의 근접화"와 "최대부하시간의 가격책정(peak-load pricing)" 등을 설정하는 것이 보다 논리적이라고 생각한다.

환경친화적인 산업을 강조하는 국제적 추세와 이에 따른 우리나라 산업의 장기적 효율성을 고려한다면, 에너지 절약형 기계설비의 설치를 유도하기 위한 가격정책이 미래지향적인 정책목표가 될 수 있다. 최대부하시간의 가격책정이 발전설비의 경제성을

도모하기 위한 가격책정이라면,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의 강조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전력수요자에게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줄 것이다.

지금까지 제기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는 현재의 평균비용방식 대신 소비자가 발전 및 송전시스템에 한계적으로 추가시키는 비용만큼을 추가요금으로 부담토록 만드는 한계비용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한국전력의 요금체계 개선을 위해 시의적절하면서도 올바른 방향제시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구체적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여러 방편들이 분야별로 국지적 통합이나 단순화 정도에 그치고 있어서, 저자가 제시한 중단기 목표를 달성하는데 과연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보일지는 의문이다.

빈 면

THE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A Quarterly Journal Published in Korean by the Korea Development Institute

Vol. 19, No. 4 **1997. IV**

Saving Rates in Korea — *Ki-seok Hong*
Comment : *Dae-keun Park / In-seok Shin* — *Joon-kyung Kim*

Increase in Unemployment Duration — *Dae-il Kim*
Comment : *Kyung-soo Choi / Ju-ho Lee*

Domestic Environmental Regulation and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 *Dong-seok Kim*
Comment : *Seung-jun Kwak / Chin-hee Hahn*

Mid-term Restructuring of Electricity Pricing — *Bon-chun Koo*
Comment : *Yang-hoon Sonn / In-gyu Kim*

For subscription to THE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please contact
Korea Development Institute, P.O. Box 113, Chongnyang, Seoul, Korea
Fax : (961) 5092. Tel : (958) 4114

論評 및 書評 寄稿案内

本誌 編輯委員會는 本誌에 발표된 論文과 本院에서 발간된 單行本 및 각종 報告書에 대한 院內外 專門家들의 論評과 書評의 寄稿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研究主題 및 그 內容과 관련되는 研究方法論 또는 國家政策上의 爭點을 表出시켜 앞으로의 研究課題와 政策方案 設定에 寄與하고, 아울러 實質的이고 建設的인 批判과 討論의 習慣을 造成하자는 趣旨에서 아래와 같은 要領으로 원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讀者 여러분의 많은 參與를 바랍니다.

〉아 래〈

1. **원고분량** : 200자 원고지 기준 30장 안팎(PC로 작성한 원고는 겉장에 200자 원고지 기준 총분량을 표시할 것)
2. **원고내용** : 論評은 해당 논문에 담긴 誤謬 혹은 爭點을 내용으로 하여 가급적이면 論文이 발표된 후 3개월 이내로, 書評은 해당 보고서의 主要內容 紹介, 寄與度 및 問題點 評價, 그리고 앞으로의 研究課題 提示를 내용으로 하되 원칙적으로 보고서가 발간된 후 6개월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람.
3. **제 출 처** : 우편 또는 인편으로 『KDI 政策研究』 編輯委員長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4. **기 타** : 제출된 원고는 本院이 정한 審査節次를 거쳐 싣게 되며, 채택된 원고는 稿料를 드림.

研究報告書 案內

第71-01卷	企業整理에 대한 意見	金滿堤
第71-02卷	金利引下의 可能性	金滿堤
第71-03卷	農業開發戰略과 米穀需給政策의 評價	金滿堤
第72-01卷	總資源豫算을 위한 成長戰略(1972~73年)	KDI
第72-02卷	새 政策의 選擇을 위한 決斷	金滿堤
第72-03卷	1973年度 豫算規模의 計測	朴宗淇 金完淳
第72-04卷	開館紀念 심포지움 發表論文集	KDI
第72-05卷	韓國經濟 安定化를 위한 提言	下村治
第72-06卷	成長과 安定政策에 관한 研究	KDI
第72-07卷	長短期計劃을 위한 諸模型(잠정)	金榮奉 外
第73-01卷	主要原資材에 대한 國際市場 分析과 價格展望	KDI
第73-02卷	社會保障年金制度를 위한 方案	朴宗淇 金大泳
第73-03卷	韓國經濟의 產業聯關分析	宋丙洛
第73-04卷	主要穀物의 國際需給事情과 價格動向	KDI
第73-05卷	우리나라 敎育投資의 經濟的 價値分析	南祐鉉 鄭暢泳
第73-06卷	우리나라 交通計劃과 政策	宋丙洛
第74-01卷	政府 主要農產物 備蓄事業效果分析	文八龍 柳炳瑞
第74-02卷	輸出 100億弗 目標와 歐洲市場展望	洪元卓 外
第74-03卷	重化學工業推進을 위한 國家持株會社의 活用方案	司空壹 外
第74-04卷	公企業 任員의 社會的 背景	兪 焄
第75-01卷	豫算制度 改善에 관한 研究	金迪敎
第75-02卷	서울市內 生產 및 所得推計(1973)	金大泳
第75-03卷	우리나라 商品輸出의 長期展望(1973~81)	宋熙秊 外

第75－04卷	우리나라 敎育의 需要形態 및 經濟成長 寄與分析	金榮奉
第75－05卷	우리나라 人口의 推計(1960～2040)	金大泳
第75－06卷	鐵鋼景氣의 測定分析과 豫測模型	金胤亨
第75－07卷	鐵鋼產業의 景氣와 長期需要展望	宋熙秊
第75－08卷	서울市內 生產 및 市民分配所得(1974)	金大泳 洪性德
第75－09卷	韓國製造業의 賃金隔差構造	金光錫 外
第75－10卷	韓國 首都圈의 空間經濟分析	宋丙洛
第75－11卷	韓國 에너지產業의 需要分析과 豫測	金胤亨 金炳穆
第75－12卷	우리나라 貿易構造의 推定(1977～86)	洪元卓
第75－13卷	內國稅의 稅目別 稅收豫測方法	朴宗淇
第75－14卷	纖維工業의 成長過程과 生產構造	金榮奉
第76－01卷	우리나라 人口移動의 特徵(1965～70)	金大泳 李孝求
第76－02卷	長期雇傭 및 技術人力計劃	金秀坤
第76－03卷	서울市內 生產 및 市民分配所得(1975)	金大泳 洪性德
第77－01卷	農家所得의 決定要因 分析	姜奉淳 文八龍
第77－02卷	IBRD借款 中規模型 水利事業 評價分析	文八龍 外
第78－01卷	1968～73年 韓國鑛工業 產業資本스톡推計	朱鶴中
第78－02卷	合板工業의 成長	宋熙秊 孫炳岩
第79－01卷	우리나라 製造業의 生產性分析(1966～75)	金迪敎 孫讚鉉
第79－02卷	輸送部門의 投資事業審査指針	鄭丙壽
第79－03卷	韓國海外移民硏究	洪思媛 金思憲
第79－04卷	石油化學工業의 長期展望	金浩卓
第79－05卷	韓國의 育兒費와 出產力	具成烈
第79－06卷	韓國機械工業의 構造와 展望	金迪敎 編
第79－07卷	韓國의 칼라TV工業	金榮奉
第79－08卷	韓國經濟의 短期豫測模型	李天杓

第79－09卷	韓國의 輸入構造 및 輸入政策	徐錫泰
第80－01卷	水資源・工業團地造成部門의 投資事業審査分析	林栽煥
第80－02卷	인플레와 企業成長能力	張榮光
第80－03卷	農業機械化의 政策課題	文八龍
第80－04卷	產業別 投入係數의 變化와 推定	金圭洙
第80－05卷	韓國의 自動車工業	李徹熙
第80－06卷	農業機械化의 投資效果分析	林栽煥
第81－01卷	社會保障制度改善을 위한 硏究報告書	朴宗淇 外
第81－02卷	韓國金屬工業의 展望과 政策課題	南宗鉉 編
第81－03卷	自動車工業의 發展方向과 政策	金榮奉
第81－04卷	福祉社會의 人力政策과 職業安定	金秀坤 外
第81－05卷	固體廢棄物 管理現況과 改善方案	鄭文植
第81－06卷	5次計劃을 위한 都市化問題의 硏究	宋丙洛
第81－07卷	韓國製造業의 產業集中分析	李奎億 徐鎭敎
第81－08卷	農業信用事業의 經濟性分析	林栽煥
第81－09卷	韓國 資本主義經濟體制 發展을 위한 硏究	黃秉泰
第81－10卷	韓國의 產業誘因政策과 產業別 保護構造分析	南宗鉉
第81－11卷	對外去來自由化와 韓國經濟	金重雄
第81－12卷	景氣綜合指數作成에 관한 硏究報告書	徐相穆 編
第81－13卷	貧困의 實態와 零細民對策	徐相穆 外
第82－01卷	糧政轉換을 위한 食糧安保備蓄制度	柳炳瑞
第82－02卷	名目 및 實效保護率 構造의 長期的 變化	金光錫 洪性德
第82－03卷	韓國製造業의 產業別 生產構造	金栽元
第82－04卷	勞使關係 事例硏究	金秀坤 外
第82－05卷	國家豫算과 政策目標(1982年度)	朴宗淇 李奎億 編
第82－06卷	1960～77年 韓國產業資本스톡推計	朱鶴中 外

第82－07卷	農外所得增大를 위한 綜合對策	柳 炳 瑞 外
第82－08卷	主要農業政策 改善方案	柳 炳 瑞 外
第82－09卷	產業政策의 基本課題와 支援施策의 改編方案	楊 秀 吉
1983		
第83－01卷	醫療保險의 政策課題와 發展方向	延 河 淸 外
第83－02卷	世界經濟環境變化와 當面課題	金 重 雄
第83－03卷	勞使關係 政策課題와 方向	金 秀 坤 編
第83－04卷	80年代 勞使關係發展을 위한 懇談會 報告書	KDI
第83－05卷	勞使協議制 硏究	朴 世 逸 外
第83－06卷	都給組織의 現況 및 都給去來의 增進方案	金 栽 元
第83－07卷	國家豫算과 政策目標(1983年度)	崔 洸 編
第83－08卷	短期金融市場의 當面課題와 發展方向	李 德 勳
第83－09卷	經濟安定化政策과 企業經營의 改善	洪 炳 裕
第83－10卷	都市行政의 發展的 機能과 改善方向	黃 仁 政
1984		
第84－01卷	韓國稅制의 主要政策課題와 改善方向	崔 洸 編
第84－02卷	退職金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向	閔 載 成 外
第84－03卷	國家豫算과 政策目標(1984年度)	金 重 雄 崔 洸 編
第84－04卷	金融國際化의 當面課題와 政策方向	金 重 雄 外
第84－05卷	인플레期待와 經濟安定	李 啓 植
第84－06卷	市場과 市場構造	李 奎 億 外
1985		
第85－01卷	產業高度化에 따른 農業構造의 改編方向	宋 大 熙 柳 炳 瑞
第85－02卷	企業結合과 經濟力集中	李 奎 億 外
第85－03卷	乘法 季節ARIMA模型의 構造識別方法	呂 運 邦 孫 英 淑
第85－04卷	海外先物市場의 活用方案	李 炫 外
第85－05卷	減價償却制度와 資本所得課稅	郭 泰 元
第85－06卷	第2金融圈의 發展과 業務領域調整	李 德 勳
第85－07卷	國家豫算과 政策目標(1985年度)	李 啓 植 郭 泰 元 編

第85－08卷	特許制度의 經濟的 效果分析	鄭鎭勝
第86－01卷	租稅政策과 稅制發展	郭泰元 李啓植 編
第86－02卷	金融產業發展에 관한 硏究, 1985～2000	朴英哲 外
第86－03卷	私學運營의 課題와 改善方案	朴烜求 外
第86－04卷	國家豫算과 政策目標(1986年度)	郭泰元 李啓植 編
第86－05卷	國民年金制度의 基本構想과 經濟社會 波及效果	閔載成 外
第86－06卷	Social Development in Action	黃仁政
第86－07卷	Financial Development Policies and Issues	金重雄 編
第86－08卷	Industrial Development Policies and Issues	李奎億 編
第86－09卷	證券市場의 發達과 機關投資家의 役割	李德勳 張忠植
第87－01卷	商品去來所의 設立에 관한 硏究	李 烘 外
第87－02卷	公企業經營評價의 理論的 背景과 技法	宋大熙 外
第87－03卷	우리나라 金融政策運營現況과 改善方案	鄭健溶
第87－04卷	Macroeconomic Policy and Industrial Development Issues	司空壹 編
第87－05卷	Human Resources and Social Development Issues	司空壹 編
第87－06卷	國家豫算과 政策目標(1987年度)	延河淸 李啓植 編
第87－07卷	에너지部門의 政策課題와 改善方案	李 烘
第87－08卷	住宅金融의 現況과 發展方向	姜文秀 金重雄
第87－09卷	地方工業의 特性과 育成政策	金鍾基 外
第88－01卷	公企業의 民營化에 관한 硏究	姜信逸
第88－02卷	社會保障制度의 政策課題와 發展方向	延河淸 外
第88－03卷	金融先物과 옵션市場의 活用方案	李 烘 外
第88－04卷	社會福祉傳達體系의 改善과 專門人力活用方案	徐相穆 外
第88－05卷	國家豫算과 政策目標(1988年度)	郭泰元 李啓植 編
第88－06卷	日本經濟社會의 進化와 韓日貿易	李奎億 外

第88-07卷	輸入自由化의 經濟的 效果와 產業調整政策	金光錫
1989		
第89-01卷	리스產業의 發展方案	李 炳 外
第89-02卷	硏究開發과 市場構造 및 生產性	金迪敎 趙炳澤
第89-03卷	產業技術開發支援政策의 現況과 改善方案	鄭俊石
第89-04卷	國家報勳報償制度의 改編方案	閔載成 金龍夏
第89-05卷	經濟規制와 競爭政策	李奎億 編
第89-06卷	國家豫算과 政策目標(1989年度)	沈相達 李啓植 編
第89-07卷	金融環境變化와 綜合金融會社의 位相	南相祐 外
第89-08卷	經濟의 國際化와 中小企業의 產業調整	朴埈卿
1990		
第90-01卷	稅收推計 模型開發에 관한 硏究	盧基星 外
第90-02卷	韓國의 適正賃金	張鉉俊 金在源
第90-03卷	地方公企業의 課題와 發展方向	宋大熙
第90-04卷	企業集團과 經濟力集中	李奎億 李在亨
第90-05卷	醫療保險制度의 改善을 위한 政策方案	權純源 外
第90-06卷	證券產業發展을 위한 硏究	李永琪 外
第90-07卷	地域發展과 地方財政	李啓植 外
第90-08卷	韓國의 退職金制度와 企業年金制度 導入方案	閔載成 外
第90-09卷	中產層實態分析과 政策課題	延河清 外
第90-10卷	中小企業의 產業調整과 中小企業支援施策의 改善方向	姜文秀 外
第90-11卷	經濟規制와 競爭政策(II)	李奎億 編
第90-12卷	國家豫算과 政策目標(1990年度)	宋大熙 權純源 編
第90-13卷	經濟開放과 巨視經濟運用	朴元巖 外
第90-14卷	國民年金財政의 安定化를 위한 政策課題 및 方向	南相祐 外
1991		
第91-01卷	開放化와 下都給體制의 改編	金周勳 趙觀行
第91-02卷	法經濟硏究(I)	李奎億 外

第91-03卷	金利自由化의 課題와 政策方向	南相祐 外
第91-04卷	國家豫算과 政策目標(1991年度)	李啓植 盧基星 編
第91-05卷	國民年金基金의 福祉部門 活用方案	閔載成 外
第91-06卷	産業化過程과 經濟制度의 對應	李奎億 編
第92-01卷	우루과이라운드의 規律分野協商과 産業·貿易政策의 改善方向	南宗鉉 張義泰
第92-02卷	地方自治制 實施에 따른 中央·地方財政機能의 再定立	宋大熙 盧基星 編
第92-03卷	廣告의 産業組織과 規制	李奎億 劉承旻
第92-04卷	舊東獨의 私有化方案 및 失業對策	高日東 外
第92-05卷	構造變化와 雇傭問題	朴埈卿 金政鎬
第92-06卷	製造業의 總要素生産性動向과 그 決定要因	金光錫 外
第92-07卷	國家豫算과 政策目標(1992年度)	宋大熙 柳一鎬 編
第92-08卷	韓國經濟의 産業貿易模型	李元暎
第93-01卷	國內銀行의 經營效率性 比較分析	孫承泰
第93-02卷	産業保護와 誘因體系의 歪曲	兪正鎬 外
第93-03卷	國家豫算과 政策目標(1993年度)	宋大熙 文亨杓 編
第93-04卷	韓國의 老齡化 推移와 老人福祉對策	閔載成 外
第93-05卷	低所得層의 生活安定과 自立對策	權純源 外
第94-01卷	地域金融의 活性化와 새마을금고의 發展	李德勳 外
第94-02卷	産災保險 財政運營方式 開發에 관한 硏究	閔載成 外
第94-03卷	美日構造調整協議의 展開와 競爭政策	崔鍾元
第94-04卷	國際化時代의 韓國經濟運營	左承喜
第94-05卷	國家豫算과 政策目標(1994年度)	盧基星 柳一鎬 編
第94-06卷	外國人直接投資와 投資政策	李弘求
第94-07卷	우리나라 自動車産業의 當面課題와 産業組織政策	劉承旻 外
第94-08卷	競爭政策의 國際比較：美國·日本·獨逸	申光湜

第95－01卷	金融自律化에 따른 生命保險產業의 對應方案	羅東敏
第95－02卷	韓・臺・日의 輸入依存構造比較	兪正鎬
第95－03卷	法經濟硏究(II)	李奎億 外
第95－04卷	國際化時代의 金融制度	崔範樹 李炯周
第95－05卷	北韓의 外國人投資制度와 對北投資 推進方案	全洪澤 外
第95－06卷	調達市場의 效率化・開放化 方案	南逸聰 外
第95－07卷	國民年金制度의 財政健實化를 위한 構造改善方案	文亨杓
第95－08卷	韓國敎育財政의 現況과 改革方向	尹建永
第96－01卷	OECD加入과 資本自由化	朴元巖
第96－02卷	金融의 效率性提高와 金融規制 緩和	姜文秀 外
第96－03卷	金融自由化와 金融監督	姜文秀
第96－04卷	製造業 總要素生產性의 長期的 變化	洪性德 金政鎬
第96－05卷	北韓의 經濟特區	朴貞東
第96－06卷	金融의 汎世界化와 證券產業의 構造改編	李德勳 崔範樹
第96－07卷	南北韓 經濟統合時의 經濟・社會 安定化 對策	朴　進
第96－08卷	中小企業의 構造調整과 知識集約化	金周勳
第96－09卷	韓國 物價變動構造의 分析과 政策對應	朴佑奎 外
第96－10卷	雇傭對策과 人的資源開發	李周浩
第96－11卷	地域利己主義의 經濟的 理解와 效率的 葛藤調整方案	金在亨
第96－12卷	經濟世界化時代의 巨視經濟運營	左承喜 編
第96－13卷	與信專門金融產業의 特性과 發展方案	李德勳 外
第96－14卷	中小・벤처企業의 發展과 場外市場의 活性化	崔範樹 李基煥
第96－15卷	中央・地方政府間 關係 및 財源調整	李啓植 外
第96－16卷	경제체제 전환기의 노동정책	조동호
第96－17卷	地方化時代의 政策課題와 制度改善方向	盧基星 編

第97-01卷	社會間接資本施設에 대한 民資誘致制度의 改善方向	盧基星 鄭源浩
第97-02卷	產業構造의 長期變化와 中小企業의 發展方向	朴埈卿
第97-03卷	海外直接投資의 要因 및 效果分析	金承塡
第97-04卷	WTO時代의 新通商議題	申光湜 編

新刊案內

경제체제전환기의 노동정책

반양장 / A5신 / 230쪽 / 정가 8,000원 / 조 동 호 저

地域利己主義의 經濟的 理解와 效率的 葛藤調整方案

半洋裝 / A5新 / 168쪽 / 定價 8,000원 / 金 在 亨 著

1996년 韓國經濟의 主要懸案과 政策對應

半洋裝 / B5 / 200쪽 / 定價 6,000원 / 韓國開發硏究院 編

地方化 時代의 政策課題와 制度改善 方向

半洋裝 / A5新 / 226쪽 / 定價 8,000원 / 盧 基 星 編

社會間接資本施設에 대한 民資誘致制度의 改善方向

半洋裝 / A5新 / 148쪽 / 定價 6,000원 / 盧基星 · 鄭源浩 著

한반도 통일시의 경제통합전략

반양장 / A5신 / 580쪽 / 정가 20,000원 / 전홍택 · 이영선 편

열린 市場經濟로 가기 위한 國家課題

半洋裝 / A5新 / 300쪽 / 定價 6,000원 / 재정경제원 · 한국개발연구원

Accounting for Rapid Economic Growth in Korea, 1963–1995

반양장 / B5 / 200쪽 / 정가 9,000원 / 김광석 · 홍성덕 저

產業構造의 長期變化와 中小企業의 發展方向

半洋裝 / A5新 / 230쪽 / 定價 8,000원 / 朴 埈 卿 著

남북한 경제통합의 새로운 접근방법

반양장 / A5신 / 456쪽 / 정가 15,000원 / 고 일 동 편

經濟危機 克服을 위한 財政改革

半洋裝 / A5新 / 550쪽 / 定價 18,000원 / 李啓楨 · 黃晟鉉 編

KDI 圖書會員制 案內

■ 會員에 대한 特典

• 會員加入期間(1년)중 本 硏究院이 발간하는 모든 刊行物을 우송해 드림. (단, 自體資料 및 配布制限資料는 제외)

■ 會　　費 : 100,000원

■ 加入方法 :

• 직접 本院 發刊資料相談室에 회비를 납입하거나,

• 가까운 우체국의 本院 우편대체계좌 (계좌번호 : 010983-31-0514919)에 납입하면 됨.

■ 問議處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07의 41 우편번호 : 130-012

KDI 발간자료상담실(Tel. 958/4326~8)

KDI 圖書 販賣處

• 서울 :	교보문고(정부간행물코너)	Tel. 397-3628
	종로서적(3층 사회관)	Tel. 733-2331
	영풍문고(정부간행물코너)	Tel. 399-5632
• 부산 :	영광도서(정부간행물코너)	Tel. 816-9500
• 대구 :	학원서림(1층 2매장)	Tel. 425-0050